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B1)

공동주관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박용진, 이재정, 강민정, 박성준,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용혜인, 윤미향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를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관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 연대 그리고 함께 공동주최·주관을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벌써 평등법을 발의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지 차별 금지와 실질적 평등의 구현의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평등법은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의 차별금지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의 실질적 평등의 구현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까지 준비도 오래걸렸습니다. 평등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결심하고 발의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발의 후에도 법안에 대해 찬반논의, 공론화도 충분히 하며 당위성을 널리 알렸고, 이에 국민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내 법안진행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평등법 제정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임에도 반대하는 분들은 많은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 국회에서 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해주시는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님,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대표님,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를 알려주시고자 와주신 패널 분들께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올해에는 꼭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러분과 함께 통과 이후의 현실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또 생기길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을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박주민입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인숙·이상민·장혜영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윤채완 과장님, 이종걸 대표님, 류민희 변호사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상희 법률위원장님과 패널로 참여해주시는 우돌님, 배진경 대표님, 이동환 목사님, 이형숙 회장님, 정성조 집행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최에 가까이 참여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별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혐오라는 형태로 더욱 확산되지는 않는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발의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인종, 성별, 출신, 종교, 성적 정체성,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한 대우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2021년 8월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평등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부족하게나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괴로운 심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46일 동안이나 이어졌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공청회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 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평등법은 그 제정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고, 불평등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평등법의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차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평등법의 통가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법안의 통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반갑습니다. 이번 대토론회가 부당한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높이고, 평등법의 통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한 발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제와 패널을 맡아주신 분들께서 우리 사회의 각종 부당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국회의원으로써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곳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21대 국회 평등법·차별금지법 발의 3년을 맞아 <대한민국 혐오 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국회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함께 대토론회를 기획하고 마련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대표발의 의원 4명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주관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평등법 공동발의에 함께 해 주신 분들입니다.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한국담당관(Ms. Sara Brandao)이 평등법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담당관은 한국에서 평등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법 제정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과 국회 상황, 일부 종교세력의 조직화된 반대 등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각국의 평등법 제정은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주요 과제라고 합니다. 담당관은 제네바에 돌아가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사회적으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국민의 인지도도 높은 평등법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큼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을 많은 분들과, 오체투지와 도보행진, 단식농성까지 온몸으로 법 제정을 요구해 온 여러분께는 그저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토론회는 우리 사회 혐오차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발표되겠지만, 차별과 혐오는 다양한 영역에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특히 소수자인 청소년들이 어린시절부터 겪게 되는 차별과 낙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평등법을 제정해야만 합니다. 차별을 막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미래세대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많은 패널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인권위 윤채완 과장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대표님,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시민전국행동 우돌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싸우고 계신 이동환 목사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이형숙 회장님, 무지개행동 정성조 집행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은 잃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디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고 가게 될 길입니다. 오늘 대토론회를 귀중한 토대 삼아,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평등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진단 대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근절하고, 헌법상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다원화 사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올해 초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세계 각국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력으로 개원 1달 만에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올해로 어느덧 발의 3년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은 오랜 시간 무시와 오해를 받아오며 우리 정치권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서 17대 국회 이후 제안됐던 여러 법안들은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발의된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쉽사리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공전하고 있는 지금,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사회구성원들의 존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법으로, 정치적 저울질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이 찬성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21대 국회의 당면과제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차별금지법 발의 3년차를 맞은 오늘날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실태를 조명하며, 이를 근절해내기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토론으로 16년간 표류를 거듭한 차별금지법이 실제적인 입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차별금지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21대 국회가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열띤 논의를 이끌어주실 사회자, 발제자,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주관·주최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 인 사 말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인가 싶더니 나뭇잎들이 초록의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네요. 여러모로 바쁘신 귀한 분들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흔쾌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 혐오차별의 현실을 살펴보고 예방방안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등을 향한 혐오표현은 물론, 무슬림혐오에 뿌리를 둔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나 기피의 존재로 낙인찍고,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형태로 표출되고 확산됩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부정과 개인의 권리침해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공적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적 공간에서의 불균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어 사회의 통합에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지난 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2022년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해 본 경험은 온라인에서 82.4%, 오프라인에서 7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혐오표현은 여성(47.0%), 노인(40.4%), 성소수자(37.8%), 이주민(36.2%), 장애인(29.0%) 등에 대한 것으로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러한 혐오의 문제는 개인의 감정 표출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정 대상을 혐오할 것을 부추기거나 기존 혐오와 억압을 강화 선동하여 차별을 내면화하고, 일상의 차별 및 제도적 차별이 연계되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19년 부터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신설하여 3년간에 걸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혐오차별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국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혐오차별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등법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보는 자리는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모아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회에서도 혐오차별 방지 제도화를 위해 담보상태에 있는 평등법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 인 사 말



1923년 4월 25일, 경남 진주에서는 ‘형평사’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단체였고, 차별금지-평등을 기치로 내건 인권단체의 창립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이 일어나서 인간 선언을 했던 그 날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차별에 숨고, 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국가의 폭력에 맞서서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인권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가폭력이 어느 정도 합법적인 규제, 시민들의 인권 의식에 힘입어 점차 사라져가자 그 자리에 차별과 혐오가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시켜 존재마저 숨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년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K-팝, K-드라마, K-영화로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가 일부 기독교 세력들의 왜곡된 선전 앞에서 멈추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매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는 권고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전히 국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국 도보행진에 이어서 지난해 상반기 국회 앞 단식농성이 이어지자 국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안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고,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내 공론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일은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합리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정치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것은 혐오세력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해도 국회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을 보면서 과대표되고 있는 혐오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게 됩니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는 국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시되 그 과정에서 혐오세력에 마이크를 주는 일은 제발 삼가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 제한이 따른다는 분명한 원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다시 문이 닫히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함께 평등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너머,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함께 가야 할 파트너임을 확인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박래군**

## 축 사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문 말미에 나온 대목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판결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문장입니다만, 판결문의 문장이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준 이유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배제하던 강고하고 해묵은 편견과 구조화된 차별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판결문 끝머리의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구절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왜 인권 최후의 보루를 사법부에 남겨둬야 합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앞장서서 하면 안 됩니까?

이미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국회엔 4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수결의 원칙은 왜 차별 금지법/ 평등법 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자발적 10만 국민동의청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88%에 달하는 찬성 여론 조사 결과까지 있었음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국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기억의 역사입니다. 성소수자 1분 발언을 했던 17년 대선 당시 저를 외락 껴안았던 한 성 소수자 청년의 눈물, 얼마 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난 섬돌향린 교회의 임보라 목사님, 변희수 하사님의 순직,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위해 분투 중인 모든 분들의 존재가 담겨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분들의 아픔과 노고를 잊지 않고 깨끗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의원 심상정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님을 비롯해 공동주최로 함께한 여러 의원님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혐오, 차별, 불평등의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과거 방송인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부터 2년 전 故변희수 하사의 비극적인 사망,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투쟁들. 이 밖에도 셀 수 없는 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이 과거는 물론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과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들으며 현실을 파악합니다. 알게모르게 지나가는 일상의 작은 차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시선과 대우를 받으며 일상을 살아가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왜 필요한지 더 넓고 단단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처음 발의되었던 때로부터 16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지난 3년간 많은 사회적 논쟁과 대립, 갈등이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긴 시간의 논쟁에 종지부 찍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과 여러 목소리들이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 이 법에 공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이번에는 꼭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IPU총회에 가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다른 나라 의원들도 세계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발제자와 패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 덕에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발의된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혐오 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을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수많은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10만명의 동의로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시켰고, 인권활동가는 2021년 10월부터 부산에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도보행진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46일간의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콩크리트보다 더 단단히 굳게 닫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에 관한 권고 및 법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전·현직 국가인권위원장은 모두 한국사회의 시급한 과제로서 평등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 95개 회원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를 권고 내렸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 수용 권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균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21대 국회의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진단 대토론회'는 본격적인 법안 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먼저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 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발의된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이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역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분들의 촉구도 있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힘이 연대와 포용의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달아 서로를 혐오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혐오할 자유'보다 '혐오 받지 않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특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닌 '혐오 받거나 차별받지 않을 자유'라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 열릴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진단 대토론회'가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아직도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도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연대와 포용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준**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 해주신 이상민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동 주관을 맡아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윤채완 차별시정총괄과장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님과 토론을 진행해주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우돌 활동가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성조 집행위원님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권리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등법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되고 또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간 국민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대법원도 성소수자와

군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지난해 성명을 내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고,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인권위는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 소수만을 위한 법은 단연코 아니고, 모두의 가족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평등법 제정 추진에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수진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국회의원 이탄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그 길을 잃고 표류한지 3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에는 정의당이, 그리고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0년 국회에 평등법 제정에 관해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약자에 대한 차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국가와 제도가 이들의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라며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안 제정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인권 규범을 설계하는 일에 범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바람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의 실태를 짚어내고, 그 고통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 축 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여러 의 원님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83.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만인 2020년, 다시 한번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님께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고,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법안이 일반법과 개별법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 평등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다양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는 개별법 및 주무부처의 한계로 발생했던 사회 전반의 정책 제도에서 장애를 고려한 사전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문제를 보건복지부 소관의 특정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범부처 업무로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깊이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혐오와 차별의 실태를 살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뜻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의원 **최혜영**

## 축 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 발의 3년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혐오와 차별 현실을 되짚는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또, 혐오차별의 현실을 낱알이 밝히고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발제해주시고 토론해주실 여러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보편적 제도를 국가들봄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이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에 기반한 개정안입니다.

한해 수천억씩 건강보험 흑자를 내는 외국인들이 마치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역이고 먹튀를 반복하는 양 국가가, 공당이 혐오발언을 내뿜습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8년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에 기반한 표현이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라는 인종차별적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치권부터 시작한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이주민 제외부터 시작해서 마치 외국인들이 코로나 감염의 원인인 듯 대한 방역대책까지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위원장들의 권고, 시민들의 압도적 차별금지법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평등을 미루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1년 남은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여전히 혐오와 차별의 민낯을 마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의원 강은미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개최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꺾림에 의뢰한 ‘2022년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치적 이념 또는 지지 정당이 다른 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률이 오프라인에서 49.7%, 온라인에서 63.4%로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80%가 넘었는데, 만약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규제가 적용될 곳은 바로 정치권이 될 것입니다.

이 책임에서 정치권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의 해이함이 그대로 언론과 매체를 통해 생증계되고, 대한민국은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혐오차별이 하나의 놀이가 되어버린 사회,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존엄할 수 없고, 안심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무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정치권의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 위에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는 제도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공론화된 뒤, 지난 3년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온갖 테러와 박해를 견디며, 소중한 사람들의 좌절과 생의 마감까지 지켜봐야 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밀처럼 간직되며 잊혀졌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도

리어 행복하고 희망찬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점검하고, 희망의 닻을 올리기 위해 토론회 개최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참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의원 **배진교**

## 축 사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어떤 존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6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16년 유예된 것입니다. 차별의 고통이 16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기다린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차별금지법은 행정부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차별시정위원회, 법무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법안을 검토했고, 이후 법무부로 이관하여 입법 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16년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점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합의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사회적 합의’가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요구 또한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UN) 인권이사회 10개 국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17년에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재차 권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 등 인권 관련 유엔 기구들의 권고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도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이미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의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2014년, 2016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노



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성별정체성’을 별도의 차별 사유로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차별 사유에 차별을 두자는 것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위원회와 전담인력을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대구광역시가 시정혁신과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최초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서울, 부산, 경남, 충남, 강원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인권 관련 부서 및 인력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권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인권적 가치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하고, 인권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기본 법적 역할을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회가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안 법원이 앞서간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의회의 시간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직후인 2020년 6월 29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은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2023년 상반기 중점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고,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올해 상반기 안에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 축 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이 21대에 국회에 발의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국제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4차 UPR에서 17개의 국가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반이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이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회와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가들이 곡기를 끊으며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5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이래 지금까지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일상에서 혐오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하고,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편의시설의 이용에 차별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까지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나중'으로 미뤄질수록 오늘의 차별은 끊임없이 용인됩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겪는 혐오 차별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공기처럼 만연한 혐오 차별을 알아차리고 이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21대 국회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혐오차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오늘의 대토론회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노력 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회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공동주최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토론회를 빛내주신 발제자 및 패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의원 **용혜인**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주최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윤채완 차별시정총괄과장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 류민희 변호사님,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의 우돌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성조 집행위원님께서도 평화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후 75년이 지났지만, 오늘 대한민국에는 이 선언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안된 지 16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출범하는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는커녕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무려 10만 명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회는 심사 기한을 연장하여 결국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미루는 안건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오랜 시간 유보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차별과 혐오는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고도화되는 사회양극화 속에서 차별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막는 일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기상조’라는 핑계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가 차별이라는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에는 나중에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채용 과정에서 성희롱 및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또 새겨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은 인권선진국을 향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회의원 **윤미향**

## 프로그램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박용진, 이재정, 강민정, 박성준,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용혜인, 윤미향

시 간	내 용	
14:00-14:10	안내 참석자소개	사회 : 서한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법대응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14:10-14:40	인사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b>1부-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b>		
14:45-15:30	발제	좌장 이상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내상황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시민사회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국제인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b>2부-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b>		
15:40-16:30	패널토론	우 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
16:30-16:45	질의응답	
16:45-	마무리	

# 목 차

- 인사말 ..... ii
- 축사 ..... xiv
- 발제 1. 국내상황 ..... 3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발제 2. 시민사회 ..... 33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제 3. 국제인권 ..... 47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패널토론
  - 우 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63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71
  -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 79
  -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89
  -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 ..... 97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1부\_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발제 국내상황]

##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 시작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혐오”의 문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함께 인식하고 말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속에도 “혐오” 표현이라 평가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혐오로 인식하고 문제시하고 대책을 고민했던 것은 비교적 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2016년), 예멘난민 혐오(2018년), 쿼어문화축제 반대(2019년) 등 여성, 외국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가장 중요한 활동 과제로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었고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에 실태조사 혹은 모니터링했던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혐오표현 모니터링”,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2021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2022년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등의 주요 내용을 통해 혐오차별의 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혐오표현 모니터링”(2020)

#### 1. 모니터링 개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여성, 노인, 빈곤,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또는 차별적 요소가 있는 정책 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47개 정당 모두)의 선거공보물(책자형),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전체 후보자 1,101명 중 944명, 85%), 지역구 후보자별 개인 온라인(유튜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홍보활동(전체 후보자 1,101명 중 685명, 62%), 지역구 후보자 토론회 492회 중 90회(18%), 비례 후보자 토론회 3회 모니터링,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 및 정당정책 방송연설, 정당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 2. 주요 결과

### 가. 요약

대상	건수(건)	주요내용
성소수자(동성애 등)	25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잘못된 사실관계 전달
장애인	14	장애인 비하표현을 부정적인 상황에 비유로 사용
여성	13	여성을 결혼, 출산 등의 역할로만 규정 여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선
노동조합	11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시 편견을 조장
역사적 사건 피해자	7	5.18민주항쟁, 세월호 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 전달
연령별(차별)	5	청소년, 청년층, 3,40대, 중년층 등 다양한 연령별 차별적인 표현사용
지역(차별)	4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역차별을 조장
종교(이슬람)	4	특정종교에 대한 배제와 비하표현 사용
특정시설	3	정신병원, 교도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지역사회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낙인 조장
노인	3	노인을 소통이 어렵고 욕심많은 사람으로 표현
이주민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폐지를 주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표현
비경제활동인구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노동이 어려워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비난하는 정책기조 홍보

## 나. 세부내용

### 1) 성적지향

홍보물 종류	내용
선거공보물	동성애 ~ 저지하겠습니다 동성애 법제화와 ~ 반대하고
선거공보물	<b>동성애 옹호 · 조장 안돼!</b>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결사 반대합니다. 인류보편 가치에 의한 남녀전통결혼에 어긋나는 조항들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성적지향) 옹호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종 인권조례 등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군복무중인 자녀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하는 <b>군형법 제92조의6(추행)항을 유지</b>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물	성 소수자 보호 명분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릴 동성애 반대하겠습니다.
언론보도	“ <b>군 동성애법</b> 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기독교자유통일당에서 정책으로 내건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 홈페이지	동성애법제화반대 동성애(성적지향) 옹호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조례등폐지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반대 <b>군복무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b>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유지
현수막	<b>동성애</b> 없는 청정국가 이룩
현수막	<b>동성애NO</b> 기독교자유통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선거공보물	동성애 합법화 반대
정당 홈페이지	~하늘과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반인륜적(동성애 동성혼 등) 악법과~ 폐지하겠습니다.
토론회	<b>에이즈와</b>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보니 에이즈환자가 1년에 1100명이고 청소년이 대다수이고 60%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미래세대가 죽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다.
토론회	강압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b>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 안한다</b> 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가 아니다. <b>인종, 남녀, 그게 동성애도 들어가는 거예요</b> “
토론회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제딸 시집을 보내는데, <b>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여자가 들어온다. 저는 기절을 할 겁니다.</b> 동성혼은 모든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 2) 장애

홍보물 종류	내용
언론보도	"여러분 비례정당 투표용지 보셨나. 마흔개의 정당이 쭉 나열되었다.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정당 홈페이지	적폐세력과 정치적 미숙아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토론회	장애인들은 다양합니다. 1급,2급,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개인 SNS	"권력에 눈 먼자들이 제 구실을 못해 우리가 지금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막	국민을, 저능아로 만드는 어용여론조사를 규탄하자.

## 3) 여성

홍보물 종류	내용
선거공보물	4비운동 지양 방안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
선거공보물	정부의 성인지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바꾸고, 낙태를 규제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공보물	신나는 청년, 활기찬 우리 미래! 여성가족부폐지
선거공보물	'남자가 약한 여자 괴롭히는 거 정말 창피해요'라고 당차게 말하던 너
정강정책 연설	"선을 보고 오는 여자가 집 없는 남자한테 결혼을 오려고 합니까?"
개인 SNS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젊은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주는 여성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선거공보물	신나는청년, 활기찬 우리미래!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 4) 노동조합

홍보물 종류	내용
선거공보물	<b>청년일자리 막는 민노총 전교조해체</b> 귀족노조 민노총과 이념편향적 전교조의등장으로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위 '귀족노동자'가 국민대다수의 <b>정당한 보상을 착취하는 일</b> 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b>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편향수업을 일삼는 것도 멈춰야합니다.</b>
선거공보물	<b>강패 노조들의 막장짓</b>
선거공보물	<b>전교조 없는 교실, 살아나는 미래세대</b>
선거공보물	<b>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역사교육을 바로잡고</b>
선거공보물	<b>전교조 법외노조 유지</b>
선거공보물	합리적 노조 “회사가 적자인데도 매년 파업하는 <b>강성노조, 귀족노조는 어려운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청년일 자리를 빼앗는</b> 등 기업을 넘어 노동자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 홈페이지	<b>전교조를 해산해</b> 교육과 교권을 바로세우고 <b>악성노동조합, 불합리한 규제와 세금제도</b> (증여, 상속 등)를 폐지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인 SNS	“노조와 규제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 <b>특권노조</b> 의 갑질 바뀌어야 되겠조?”

#### 5) 역사적 사건 및 피해자

홍보물 종류	대상	내용
선거 공보물	사건(5.18)	<b>5.18 유공자 명단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b>
선거 공보물	사건(5.18)	<b>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및 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b>
정당 홈페이지	사건(5.18)	특히 <b>광주 5.18 북한군 개입</b> 의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군경희생자들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게 하고~
토론회	사건(5.18)	“하지만, <b>광주는 80년대의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로 추락했습니다</b> ”
토론회	사건(세월호)	<b>세월호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b> 텐드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b>문란한 행위를</b> 했다는 기사
개인SNS	사건(세월호)	<b>세월호 이상화</b> 는 그 중 하나이자 가장 강한 표상이었습니다
개인SNS	사건(세월호)	<b>세월호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동정심 위에 급조된 가설 건물</b>

6) 이주민, 청소년, 노인, 세대

홍보물 종류	대상	내용
개인SNS	이주민	<b>힘없고 백없는</b> 다문화 가정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개인SNS	이주민	무차별적, 역차별적 <b>다문화 정책 폐지 및 수정</b>
개인SNS	세대비하(청년)	어이 <b>젊은친구?</b> <b>신사답게</b> 투표해~
개인SNS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설명 중 “학교다니다가 짤린 사람들 들은 사실 <b>학교에서 내박지않아요</b> ”
개인SNS	세대비하(노인)	“ <b>요양병원 난립</b> 에 걱정이 앞서고” “요양병원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 <b>흥덕의 요양타운화를 막겠습니다.</b> ”
개인 SNS	세대비하(노인)	20대 국회는 <b>역대 최고령</b> 국회였습니다. <b>혁신과 소통이 사라졌</b> 습니다. 대신 진영 간의 <b>기득권 싸움만</b> 난무했습니다.
정당 홈페이지	세대비하(노인)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하여 정치에 복귀하고자하는 기인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 <b>노욕</b> ’이라고 하겠는가?
언론보도	세대비하(3040)	<b>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b>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선거 공보물	비경제 활동인구 비하	아마추어 사회주의정책으로 깊은 상처입은 우리경제 / <b>일하는 사람</b> 이 대우받고, <b>공짜심리</b> 가 사라져야 합니다.

7) 지역

홍보물 종류	내용
선거공보물	경기 북부의 대표도시 고양, 하지만 책임과 대우는 <b>시골 지방자치단체</b> 와 같습니다.
언론보도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께서 <b>인천 촌구석</b> 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정당 홈페이지	이 대표는 오늘(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 <b>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체증이 많을까' ,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b>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발언했다.
토론회	“용인의 공용버스터미널을 보십시오. <b>저 전라도 경상도 시골의 군수면(군소재지면)</b> 만도 못합니다.”

## 8) 종교(이슬람) 혐오표현

홍보물 종류	내용
선거 공보물	이슬람~저지하겠습니다 /이슬람 특혜를 반대하고
선거 공보물	정부는 이슬람 문화를 끌어 들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기독교세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SNS	“이슬람 채권 면세 혜택을 주는 1)‘스쿠크법’통과를 추진했을 때~ 강력히 반대해 저지시켰다.”
현수막	~이슬람 없는 청정국가 이룩

## 9) 특정시설

홍보물 종류	대상	내용
선거 공보물	장애인	세교 정신병원 막겠다고 갑질 막말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선거 공보물	특정집단(재소자)	반드시 21대국회 임기내에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확정짓겠습니다. 모든 정치역량을 교도소 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개인 SNS	특정집단(재소자)	안양교도소는 지난 50여년 동안 안양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 □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

### 1. 실태조사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sup>2)</sup>하였습니다.

- 1) 수쿠크법 :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이슬람 율법에 맞게 발행하는 채권)
- 2)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0. 5. 18. ~ 11. 17. 기간동안 실시한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연구진은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시설이용 △군대, 구급시설 등 국가기관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기타 혐오차별 △건강수준 등 9개 분야에서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혐오차별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이 설문에 참여

설문조사에서 법적 성별정정을 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는데, 의료적 조치비용, 법적절차, 건강상 부담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86%는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같은 기간 SNS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교육 및 고용 영역에서 비하발언과 차별대우 경험,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 군복무 및 형사절차·구금시설에서 부당한 대우,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 2. 주요 결과

### 가. 응답자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트랜스여성 189명(32.0%), 트랜스남성 111명(18.8%),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221명(37.4%),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70명(11.8%)이 응답하였습니다.

### 나. 법적 성별 정정

응답자의 8.0%인 47명이 법적 성별 정정을 했고, 4.7%인 28명이 현재 법적 성별 정정절차를 진행중이며, 86.0%(508명)은 법적 성별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드는 비용(58.9%), 복잡한 법적 성별 절차(40.0%),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따른 건강상 부담(29.5%)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법적 성별 정정을 했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82명은 그 과정에서 성전환 의료적 조치와 관련한 요건 갖추기(78.1%), 서류 준비 및 작성(61.0%), 정확한 정보 찾기(47.6%), 법원 심리과정(31.7%), 가족들 반대(28.1%)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다. 신분증 제시 및 관공서 이용 경험

응답자들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의료기관 이용(21.5%), 담배구입이

나 술집 등 방문(16.4%), 보험 가입 및 상담(15.0%), 은행 이용 및 상담(14.3%), 투표 참여(10.5%), 전화·인터넷 가입 및 변경(9.2%), 증명서 발급(8.5%), 주택 관련 계약(8.1%) 등의 일상적 용무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응답자의 19.5%(115명)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시 법적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27명),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26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라. 가족생활 및 일상

가족들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203명(34.4%),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152명(25.7%), 지지하지도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는 경우가 96명(16.2%)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 모른 채 하거나(56.6%), 본인이 원하는 성별 표현을 못하게 하거나(44.0%), 언어적 폭력(39.4%), 경제적 지원 중단(12.9%), 신체적 폭력(9.9%),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상담사/종교인에 데리고 가는 경험(9.9%), 집에서 내쫓은 경험(9.4%)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사람들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인지하게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76.7%, 451명), 사람들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본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73.7%, 434명)하고, 본인의 성별 정체성대로 인식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71.8%, 423명), 외모나 몸 때문에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66.4%, 391명)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22.3%(132명)는 전환치료(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아니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살아가도록 강제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치료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고, 11.5%(68명)은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 마. 학교·교육 영역

중고등학교 다닌 경험이 있는 584명 중 92.3%인 539명이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 부재,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복 착용 등 힘들었던 경험이 한 가지 이상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67.0%는 중고등학교 수업 중 교사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고, 21.3%는 교사로부터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대학교·대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469명은 교수 등이 수업중(42.4%)에, 수업외 시간(24.7%)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고, 14.9%는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바. 고용·직장영역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469명 중 268명(57.1%)이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구직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직·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는 반응(48.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37.0%), 출신학교 등을 기재해야 하는 지원서류 제출(27.0%)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에서 화장실·탈의실 등 남녀가 구분된 회사 내 공간(26.9%), 남녀가 구분된 복장(14.1%), 출장·워크숍 시 남녀가 분리된 숙소(10.9%) 등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용모·말투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반복적 지적(26.6%)당하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받고(17.1%),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8.9%), 성희롱 또는 성폭행(8.2%)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사.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

응답자의 40.9%(241명)가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고, 39.2%(231명)가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며, 37.2%(219명)가 멀더라도 남녀공용 또는 장애인화장실,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36.0%(212명)는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관공서 이용하면서 공무원 등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이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은 경험(12.5%, 62명)이 있고, 10.1%(50명)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추가 서류나 절차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아. 군대, 교정시설 등 국가기관

출생 시 지정 성별이 남성인 응답자(259명) 중 42.1%(109명)이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나 군복무를 마쳤는데,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공동 샤워시설 이용시(58.3%), 성소수자 비하 발언 및 이를 용인하는 문화(54.6%), 성별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52.8%)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관심사병으로 분류되거나(29.5%), 성희롱 또는 성폭력(12.4%)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157명 중 15.9%(25명)가 경찰 및 검사에게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는 호칭(18명), 모욕적 발언(17명),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조사하여 성별 정체성이 알려짐(7명) 등 성별 정체성 관련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였습니다.

### 자. 의료적 조치 및 의료접근성

응답자의 49.3%(291명)가 성주체성 장애 관련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호르몬 요법(250명, 42.4%), 성전환 관련 외과적 수술(123명, 20.9%) 경험이 있었고,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당장 진단서가 불필요(45.1%), 경제적 부담(34.3%), 의향이 없음(33.3%), 제대로 진단할 정신과 찾기 어려움(26.3%) 순으로 응답했으며,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거나 중단한 이유는 경제적 부담(50.9%), 주변 시선(42.0%), 정신과 진단 없어서(34.9%),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34.9%)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성전환 관련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는 비용 부담(71.0%),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37.8%),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33.1%), 수술에 필요한 의료적 요건 맞추지 못해(32.6%), 주변 시선(31.1%), 수술과정의 위험성(30.7%) 순이었으며, 호르몬 요법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285명들은 직장을 다니면서(43.2%), 학교를 다니면서(33.3%) 진행하였고, 퇴사(9.5%)나 휴학(8.8%), 자퇴(4.6%)를 하고 진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적 조치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351명 중 73.2%는 트랜스젠더 친화적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이름 또는 성별이 맞는지 질문을 듣거나(16.8%), 의료진에게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거나(16.2%), 모욕적 질문을 들었고(8.3%), 성전환 관련 상담 등을 거부당했다(7.4%)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적 의료기관을 방문한 526명 중 28.5%는 의료인·직원이 이름·성별이 맞는지 물었으며, 10.7%는 모욕적 발언 또는 불필요한 질문을 들었다고 응답

전체 응답자 중 164명은 지난 12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으나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303명 중 5.3%(16명)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2020)

### 1. 모니터링 배경

정부 홍보물은 국가 정책의 소통창구가 되므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단어, 표현, 이미지 등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인식,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매 분기마다 홍보물 콘텐츠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정책정보 확인 주간’을 통해 정부 홍보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경 잇따라 정부·지자체의 홍보물에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3월~5월 기간에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하여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홍보물에는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성, 장애, 인종 등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2.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사례

#### 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균형 있게 묘사하지 못하는 경향

-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하는 사례



○ 주요 내용	
<b>1 공공-민간시설 초기대응 및 대피훈련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합병원, 대학병원, 여객선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초기대응훈련 집중 실시* *연세 대학의료원 71개소, 용인 병원</li><li>• 중앙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해, 화재·지진 등의 재난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설자체 대피(대피유도)훈련 실시 *아산병원 27,381개, 관공서시설 2,111개, 의료기관 223개, 관공서당 12개 등</li></ul>	A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in a blue uniform using a fire extinguisher on a fire in a facility. A person in a red shirt is running away from the fire.
<b>2 재난취약시설 화재 대피훈련 집중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스포츠클럽 미싱지 고시원, 구조상 화재에 취약한 옥주당 등 화재취약시설 집중 훈련* *신촌 화재취약시설 321개소, 용인 병원</li><li>• 소방서 활동 화재 대피훈련뿐만 아니라, 자체 화재 대피(대피유도)훈련 실시* *시군구별 2곳 이상 대피훈련 실시</li></ul>	A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in a blue uniform using a fire extinguisher on a fire in a facility. A person in a red shirt is running away from the fire.



• 가족 내 역할(가사, 존칭 사용 등)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담은 사례



• 특정 성별에 대표성,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사례



• ‘국민’ 용어 사용은 정책 대상으로서 ‘비국민’을 배제하고, ‘국민’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을 같이 사용하여, 내국인 국민과 구별하는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례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형)로 분류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 기타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센터 회원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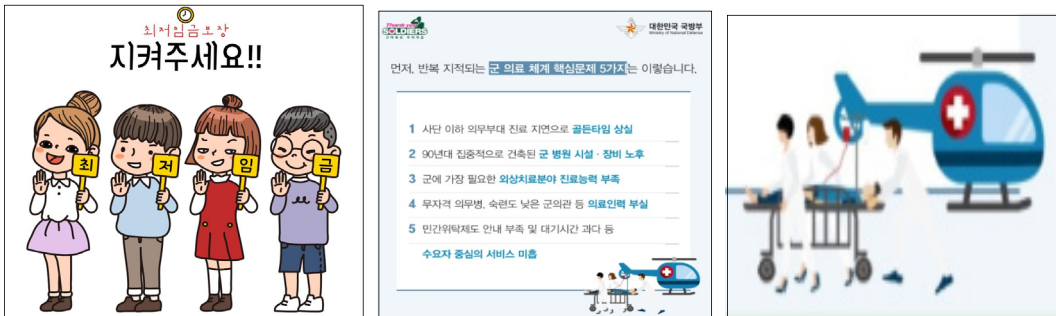


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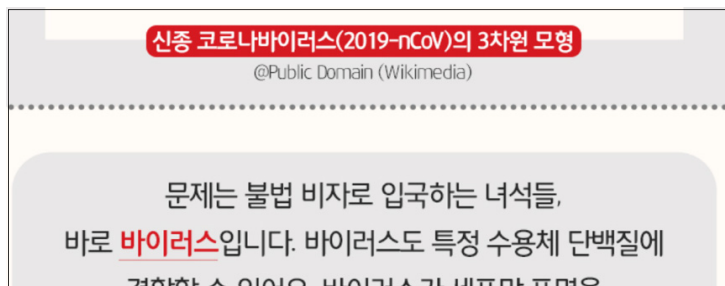
- 아시아권 출신 외국인(어두운 피부색, 곱슬머리, 어두운 표정)은 부정적 이미지로, 서구권 출신 외국인은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하는 사례



- 치마, 붉은색 계열 의상, 하이힐, 신체 굴곡 등 여성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례



- 외국인의 입국이 국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전제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등록 외국인을 사회문제와 연루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는 사례



-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은 당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된 사례



#### 다.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나타나는 혐오표현

- 다문화 가족 이외의 ‘다문화 ○○’, ‘선량한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허위 난민신청자’, ‘불법체류자’ 등을 사용하여 특정 국민, 특정 외국인을 구분·배제하거나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가져오게 하는 사례

이날 다문화 국민들은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접근성 부족, 다문화인의 창업 지원사업 참여 곤란, 다문화 신생업체의 초기 시장개척 과정에 겪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무사증 발급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관광목적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합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중현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이드에서 남편 출근 챙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사례



- 장애인의 반대적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

**(그림 5)분자 비콘 NANP 센서를 사용한 인간 시료 분석**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의 혈장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분자영상기반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사용한 특이적 miRNA 및 항원의 형광 이미지는 치매 증증 정도는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및 신경심리검사 CERAD-K를 통해 분류를 하였고, 제작한 키트 사용결과 분류한 치매 증증 정도와 대조하였을 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작한 분자영상기반 치매 조기 진단 키트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정상인에서부터 경도인지장애, 증증 치매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 시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



천연기념물(동물)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표지로 어떤 디자인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천연기념물(동물)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 발간

- 평소 자연유산을 체험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조금이나마 자연유산을 알리고자 점자감각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점자감각책에는 점자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일러스트와 이에 담긴 설명나 인요 등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제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점자감각책에 수록된 일러스트, 스토리텔링, 내레이션, 동요 등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따뜻하게 시각장애인에게 전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점자감각책은 2020년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에 맞춰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점자도서관,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애 관련 관용 표현이 장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

**한글날 특집: 나무꾼은 산신령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대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양한 관용표현으로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를 재구성했어요. 얼마나 어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으로 표현하고, 외국인노동자는 ‘동포인력’, ‘~~외국인력~~’ 등으로 표현, 사람이 아닌 노동력, 상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

○ 동포 인력을 고용한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된 경우 최대 3년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 고용을 제한하여,

- 동포 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3. 모니터링 주요 결과 요약

#### 가. 정부 홍보물 모니터링 개요

이 모니터링에서는 정부 18개 부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sup>3)</sup> 기존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 나. 성별 관련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결과, 전체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가 발견되었고, ‘성별 대표성 불균형’(약 35%),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약 28%),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약 20%)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분류	내용	주요 사례	비율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li> <li>- 여성다움, 남성다움 편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상담사, 간호사, 돌봄의 주체, 서비스업종 종사자로 묘사하는 반면, 남성을 현장근로자, 전문직 등으로 묘사하는 등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이미지의 비중이 높음</li> <li>-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재난대처, 사무실환경 등)</li> <li>- 고정된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속눈썹, 치마, 붉은 색상(남성은 푸른 색상) 등이 전형적으로 사용</li> <li>- 다이어트, 피부관리 등을 여성의 전유물로 묘사</li> </ul>	27.7

3) (사)한국YWCA연합회(성별 분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 분야),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인종·이주민 분야)에 의뢰하여 2021. 3.부터 2개월 동안 실시.

분류	내용	주요 사례	비율 (%)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용</li> <li>- 특정 성 비하 열등 묘사</li> <li>-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신체 성적 대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구분이 필요 없는 단어에 '여'를 붙이는 용어<sup>4)</sup>가 불필요하게 사용</li> <li>- '클럽 죽순이' 등 비하 표현, 여성의 신체노출 이미지 등 사용</li> </ul>	4.7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성별 표현</li> <li>- 부부, 연인, 친구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하게, 개인간 문제로 가정</li> <li>-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거나, 데이트 폭력을 개인간 문제로 묘사하거나 외국에서 캣콜링을 관심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나타남</li> </ul>	3.3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 한정</li> <li>-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족을 엄마와 자녀 관계로 한정하거나, 3인(부모, 아들)-4인(부모, 아들, 딸) 가족 이미지를 정상가족으로 표현하여 1인 가족 또는 2인 가족이 배제되는 등 가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활용</li> <li>- 육아, 등교·등원, 가사, 명절음식준비 등 돌봄노동의 주체로 여성을 전면에 내세움</li> </ul>	19.6
성별 대표성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성별, 연령에 치우치거나 배제, 표준, 기준으로서의 특정성별에 대한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여성 이미지가 강조되고, 여권의 대표이미지, 전문가, 기업대표 등에 남성 이미지가 특히 강조되는 등 성별 대표성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li> <li>- 청년층 대상 홍보물의 대표이미지로 남성 이미지가 활용됨</li> <li>- 다수가 등장할 때 여성이 주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li> </ul>	34.5
성차별적 귀책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육아 등의 이미지에 남성이 등장하지 않아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거나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이 나타남</li> </ul>	9.5
구시대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시대적 표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망인, 올드미스, 처녀, 출가외인 등 현 시대의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표현이 쓰임</li> </ul>	0.9

## 다. 장애 관련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결과,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 장애 극복, 능력 개발, 장애인은 어렵다/안된다 등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건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분류	주요 사례	비율 (%)
장애와 관련한 금지된 표현	- 장애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사용 - 장애인에 대한 수동적, 시혜적 의미를 내포한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장애우’가 다수 행정부처에서 사용 - ‘정신지체’가 2008년 ‘지적장애’로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사용됨	47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음 -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의 문장을 통해 장애를 극복의 대상,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함	53

심각한 수준의 차별표현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발견된 표현들이 장애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을 담은 차별적 표현으로 보이고, ‘정상인’, ‘일반인’, ‘장애우’, ‘정신지체’, ‘도전과 극복’ 등의 표현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 라. 인종·이주민 관련 모니터링 결과

전체 150개(중복 포함 213개)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정형화·편견·고정역할’이 우려되는 표현이 약 36%, ‘혐오표현’이 약 2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도자료(35%), 카드뉴스(23%), 블로그 등 웹진(18%)의 순으로 나타났고, 카드뉴스의 경우 차별적인 이미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4) ‘여성 다이버’, ‘탈북여대생’, ‘여성가장’, ‘여의사’, ‘여대생’ 등 맥락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여성 존재를 구분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분류	주요 사례	비율 (%)
혐오·차별·비하 표현	‘선량한 외국인’, ‘외국인밀집지역’, ‘다문화인’ 등 특정한 집단의 이주민 또는 외국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해당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거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비하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 많이 발견됨 <sup>5)</sup>	26
정형화·편견·고정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영어교사는 금발의 백인, 미등록 외국인은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 등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특정지역 출신으로 한정</li> <li>- 탈북 여성을 내던져진 존재로 표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표현, 난민신청자에 대한 ‘허위’와 같은 표현 등 부정적인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됨</li> </ul>	35
명예·수치심·사생활침해	-	0
외모 비하	-	0
사회문제·위험·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외국인을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고 특정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범죄와 연관된다는 암시를 줌</li> <li>-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를 부정적 사회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표현</li> <li>- 바이러스를 불법 비자로 입국하는 녀석들로 비유하는 등의 표현이 발견됨</li> </ul>	17
불균형대표·비가시화	이주민, 이주노동자 등이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용어가 사용되면서 이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배제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발견됨	12
롤모델·견본	이주여성의 전문직 취업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상대적 차별표현 사용	1
기타 차별·침해	인종·이주민 이외에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표현이 발견됨	9

5) ‘선량한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다문화 국민’, ‘다문화인’, ‘다문화 신생업체’ 등의 용어가 발견됨.



## 마. 종합 검토 결과

모니터링 결과,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관련하여 심각하거나 두드러지는 혐오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물의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직후에 해당 모니터링이 진행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정부의 정책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2020년부터 운영된 각 부처의 분기별 자율적인 점검 시스템이 심각한 수위의 혐오표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의 특정 속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표현,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홍보물 콘텐츠 대응에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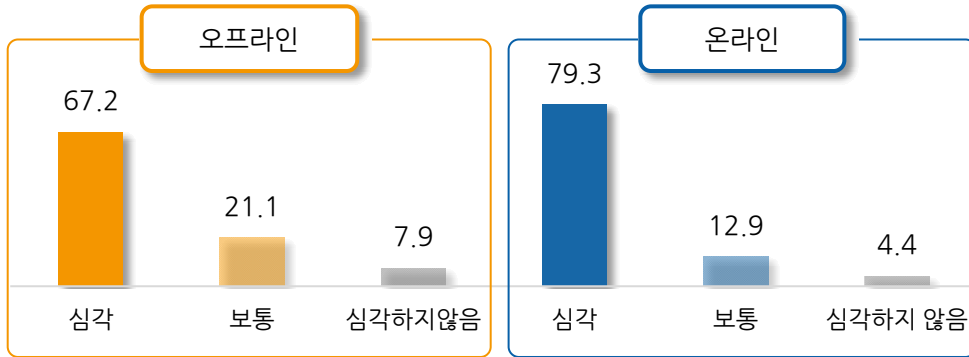
### 1. 조사 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1. 5.경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방식(95%신뢰수준, 표본오차 ±2.83%point 수준)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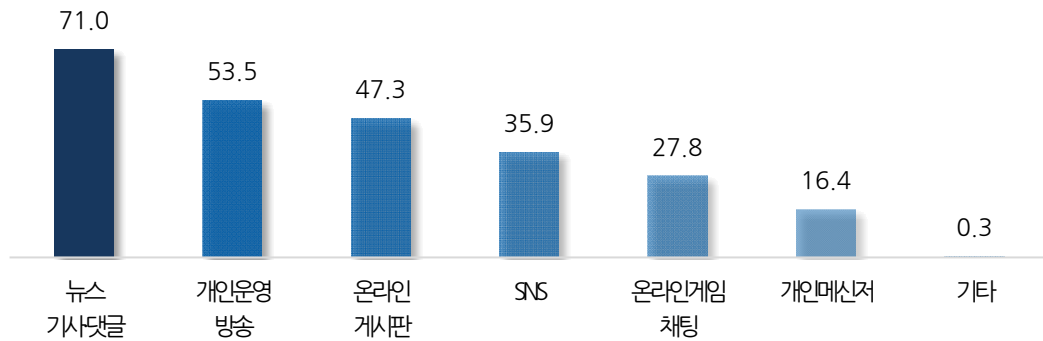
#### 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

이 조사에서 오프라인 실생활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응답은 67.2%로 조사되었으며,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79.3%가 ‘심각하다’고 답해, 응답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장소는 인터넷 뉴스 기사 및 댓글(71.0%), 유튜브 등 개인 방송(53.5%), 커뮤니티 게시판(47.3%), SNS(35.9%) 등의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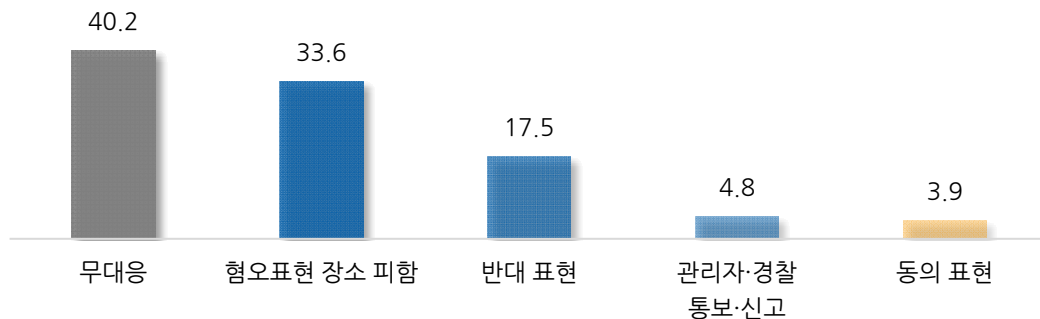
####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장소



#### 나. 온라인 혐오표현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 신고처리 절차 개선 등 대응 필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73.5%)’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40.2%)’거나 ‘피하게 되었다(33.6%)’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응답이 73.8%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혐오표현에 반대 표시(17.5%)’를 하거나 ‘신고했다(4.8%)’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5%)’,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0.0%)’ 등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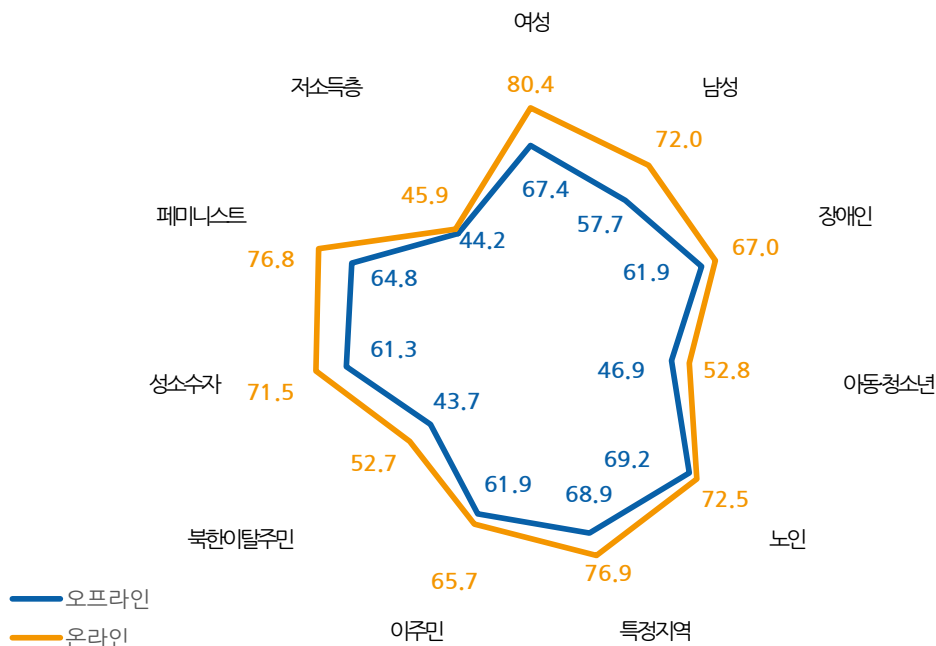
###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이러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 ‘용이한 신고·조치 절차마련(89.5%)’,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강화(87.5%)’, ‘관련 기구의 적극 심의·조치(87.3%)’, ‘사이트별 관련 지침 제작·게시(86.9%)’ 등에 대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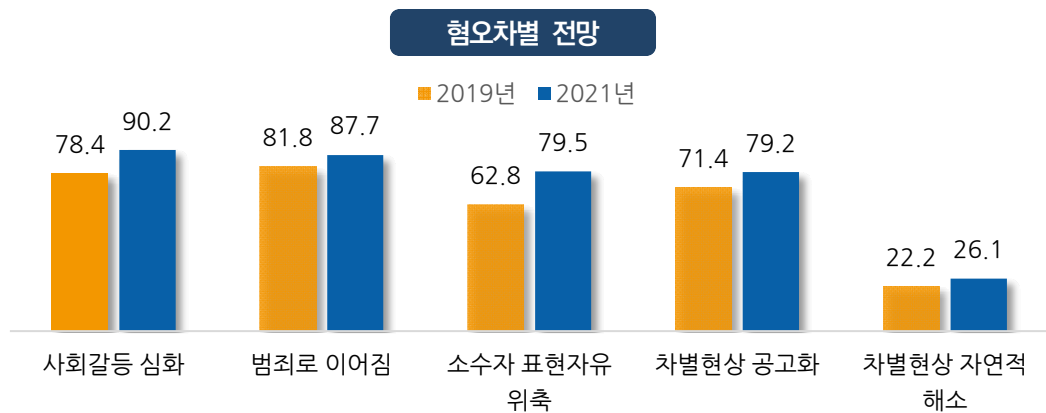
한편,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특정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혐오표현 경험 대상



## 다. 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 증가, 향후 사회갈등 심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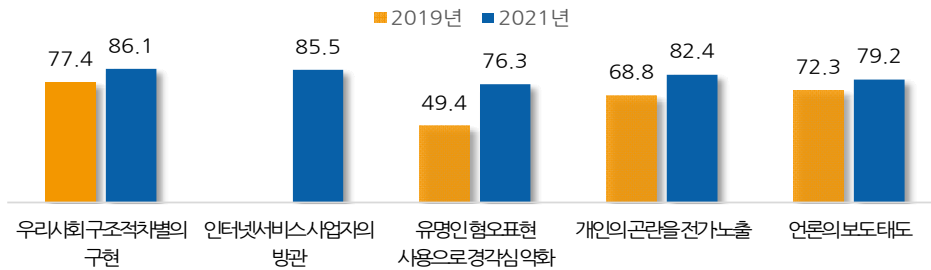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59.5%)’고 느끼는 가운데, 향후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90.2%)’,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87.7%)’, ‘소수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79.5%)’, ‘차별 현상이 굳어질 것(79.2%)’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 전망 수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86.1%)’,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82.4%)’, ‘언론의 보도 태도(79.2%)’를 꼽은 응답은 2019년 조사 결과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방관’ 항목에는 85.5%가 동의한다고 답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20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치인 등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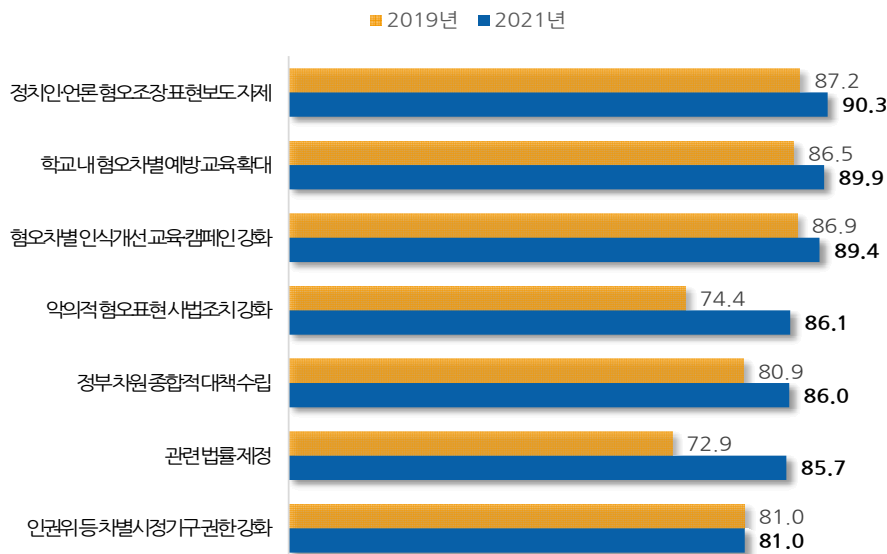
### 혐오표현 발생 원인



### 라. 다양한 혐오차별 대응 정책에 대부분 동의, 평등법 찬성 전년과 비슷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였으며(90.3%), 혐오차별 대응 정책인 ‘학교 내 혐오차별 예방 교육 확대’(89.9%),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강화(89.4%)’, ‘악의적 혐오표현 사법조치(86.1%)’,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6.0%)’,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85.7%)’, ‘차별시정기구 권한 강화(81.0%)’ 등에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은 2020년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88.5%)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 혐오차별 대응 정책



## □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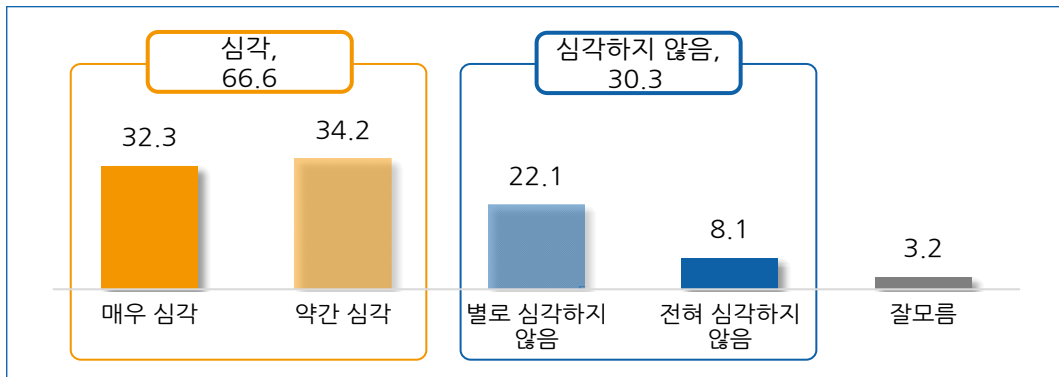
### 1. 조사 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2. 4.경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방식(95%신뢰수준, 표본오차 ±3.09%point 수준)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sup>6)</sup>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주요 결과

○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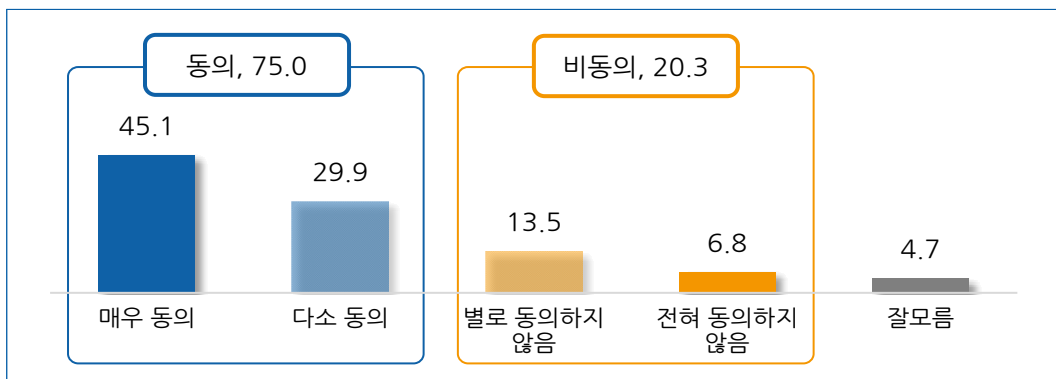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6.6%(매우 심각 32.3%, 약간 심각 34.2%)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3%(별로 심각하지 않음 22.1%, 전혀 심각하지 않음 8.1%)로 조사되었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2%였습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021년 5월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8%p 수준

○ 귀하께서는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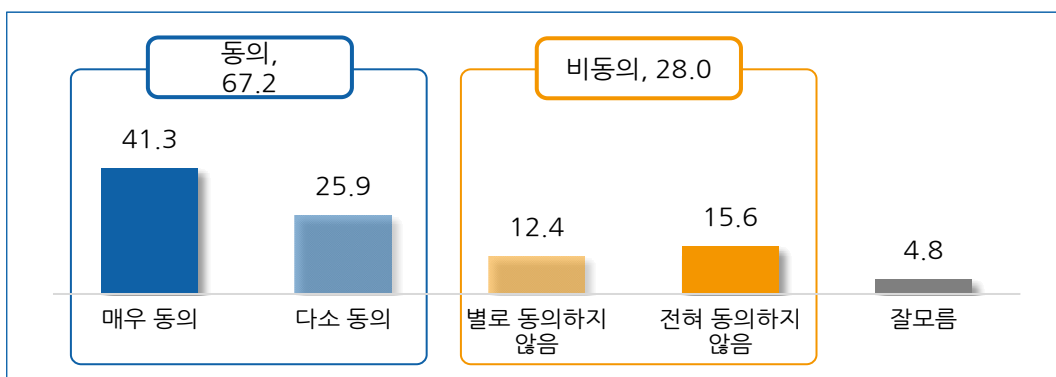
[N=1,003, %]



-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5.0% (매우 동의 45.1%, 다소 동의 29.9%)로 조사되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20.3%(별로 동의하지 않음 13.5%, 전혀 동의하지 않음 6.8%)로 조사되었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로 조사되었습니다.

○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N=1,003, %]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2%(매우 동의 41.3%, 다소 동의 25.9%)로 조사되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2.4%,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로 조사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8%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에 따라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광주/전남/전북에서 84.5%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78.0%), 서울(63.6%), 경기/인천(73.5%), 부산/울산/경남(68.6%), 대구/경북(69.9%), 대전/세종/충청(62.5%) 등 제주(58.6%)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70%대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습니다.

## □ 마무리

지난 4. 16. 세월호 9주기 기억식이 진행되던 안산 화랑공원 현장에서 누군가가 확성기를 켜고 “야, 세월호, 야, 이것들아, 슬픔을 강요하지 마라, 유골을 왜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기억식 행사를 방해하며, 참사 피해를 조롱했습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근처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아냥이나 폄훼를 담은 혐오표현을 현수막으로 게재하거나 확성기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는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져 있고, 공사를 시작한지 3년째이지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혐오표현과 행동들은 누군가들의 조직적 활동으로 혹은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무심한 행동들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평등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발제 시민사회]

## 3년간 한국사회에서 심화된 혐오·차별의 문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3년간 한국사회에서 심화된 혐오·차별의 문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1. 들어가며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며 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표명했다. 그리고 2021년 10만 행동이 이어지자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평등법 발의가 이어졌다. 17,18,19대 국회 이후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 것은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인권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고 여겼던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7년 촛불이후 인권시민사회 운동은 세월호 참사, 강남역 10번출구 사건 이후 더 드러난 여성혐오, 2010년 이후 더 거세진 성소수자와 이주민, 난민 혐오 등 우리 사회 혐오표현과 선동, 모욕과 폭력 등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에 2017년 3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혐오와 차별은 특정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이고,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며 평등의 의제를 세우고 차별금지 원칙을 확인하며 반차별 운동의 확산과 실질적 입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하며 재출범했다.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 흐름을 만들어왔다. 집회와 행진 등을 벌이며 평등의 주체가 되려는 대중의 힘을 조직해왔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축전하면서 운동을 확장해왔다.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일상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담론을 만들고,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각 운동(단체 및 개인)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나/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되도록 하는 담론의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와 함께 각계에서 반차별 운동

의 목소리와 행동이 드러났고, 실질적 입법을 위해 각계 운동 영역과 전국 각지의 운동 단위들이 21대 국회 개원 후 3년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갔다.

21대 국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이 구조적 차별의 문제조차 인정하지 않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지방 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다. 3년간 시민들의 거센 요구와 각계 시민사회, 언론, 국내외 인권 기구들의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답하지 못했다. 정치의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등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시민들의 열망이 여기서 머무를 순 없다. 지난 몇 년간 애는 썼지만, 법제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반차별 운동의 기세가 여기서 꺾일 수 없다. 반차별운동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사이에도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공고한 차별의 구조와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세있게 운동을 해왔다. 누군가 싸움은 기세라고 했다. 그 기세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치에 시민들이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놓여 있는 수많은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어 말하고, 알리는 작업을 반차별 운동은 성실하게 해왔다. 오늘 이 발제는 차별의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지점 등을 정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의 문제 개선에 대한 시작 지점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정치에서 제정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자 한다.

## 2.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년 4월~5월에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 때 주제로 다룬 반차별 의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주요한 차별과 관련한 의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복잡한 차별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연결성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의

미와 역할을 짚어볼 수 있었다. 쟁점 토론회 당시 이슈를 다시 짚어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찬성 VS 반대’, ‘성소수자 VS 보수개신교’라는 이분화된 논쟁 구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 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수많은 역사와 논의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잘 확인하고, 그 논쟁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짚어보기 위해 당시 토론회 쟁점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 1)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 차별의 관점에서 다시 읽기<sup>1)</sup>

주요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적괴롭힘에 의한 차별로 규정하면서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답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시화되어야 하는 방향 및 반차별 운동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차별의 관점에서 당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고용-성 차별이다. 법 제정이 실효성 있는 차별의 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상 고용 차별 규정들의 내용과 쟁점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지고 논의되고 검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1. 1. 2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지원단체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사안 직권조사 의결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에 젊은 여성들만이 배치되었던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반드시 짚어지고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성차별로 꼽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직권조사 결과 나온 결정문에서 2011년 박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데스크에서 비서로 근무한 직원은 12명으로 모두 20~30대, 7~9급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30대, 여성, 신입’이라는 기준으로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가 배치된

1) 조혜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만나는가’ 중에서 발췌하여 정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1차 | 서울시장 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자료집, 2021.04.06

것은 서울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타인을 챙기고 돌보는 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서 직무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아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 배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배치 성차별 행위는 서울시가 시장 비서실의 데스크 업무를 어떻게 성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후에 짚어볼 성차별적인 비서 노동의 요구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 모두 이러한 젊은 여성 비서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수면 위로 보이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 아래에는 언제나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성)차별, 괴롭힘, 성희롱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차별로서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규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 된 배치차별과 관련하여 차별금지(16조)/평등법(15조 또는 16조)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등을 배치상의 차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배치 승진에 관해 일반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비해 무엇이 금지되는 차별행위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이 차별을 없애나가는 실제적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차별로써 드러내고자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그 논의가 다시 법을 성안시키는 순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 2) 성별이분법적인 차별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 차별금지사유 ‘성별정체성’<sup>2)</sup>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 모두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 지난 2020년 일어난 변희수 하사

---

2) 박한희,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별정체성이 갖는 의의’ 중에서 발췌하여 정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2차 |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2021.04.13

의 강제전역 사건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의 입학포기 사건 그리고 2021년 잇따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마주하며,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공고한 차별의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적으로 드러내고 명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소수자 집단이 겪어 온 차별의 경험을 반영하고 가시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배제와 낙인 혐오로 고통받아 온 트랜스젠더 집단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의 차별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연해 있으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혐오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명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가 이러한 차별경험을 없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또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은 이들이 더 많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성별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해옴에도 외부성기만을 이유로 임의로 지정된 성별에 의해 구성된 것이 바로 지금 국가의 신원(身元) 체계 및 법질서다.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경직된 논리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삭제되고 허물어져야 하는 것은 그러한 성별이분법적인 기성의 법질서이지 성별정체성은 아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규정하고 명시하는 것은 향후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더 나은 논의를 끌어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3)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무는 차별 대응이 필요하다.<sup>3)</sup>

문재인 정부 때 공정담론의 배경에 놓인 능력주의의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능력’ 개념 자체가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능력주의 담론에 기댄 제도화나 정책대응만

3) 미류, ‘능력을 개인에서 사회의 문제로 전복시키기’ 발제문 중에서 발췌하여 정리,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4차 |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2021.05.11

으로 차별의 구조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이 능력주의/자유주의(‘출신성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하지 말라’) 담론으로 흡수되기보다, 그것을 재구성하고 넘어서는 운동이 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자 했다. 실질적 입법운동이자 반차별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오랜 성/인종차별철폐운동의 성과인 ‘간접차별’, ‘적극적(차별시정) 조치’가 도입된 역사와 그로 인해 등장한 ‘역차별’ 논란과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를 짚어보며 반차별 운동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중요하게 제시한 것이 바로 ‘능력’을 개인에서 사회의 문제로 전복시키자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생산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다. 경력자를 기대하지만, 경력자를 키워주지 않는 사회, 고용부담을 덜기 위해서만 미경력자를 원하는 사회. 사회의 역할을 능력 평가로부터 능력 키우기로 바꿔야 한다. 삶과 노동의 역량을 서로 키워줄 수 있는 사회.

‘능력’에 다른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 ‘능력도 다르고 노력이 다를 때’ 어떻게 동등한 관계맺기가 가능할지 질문하는 차별 대응이 필요하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를 넘어, ‘이게 왜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질문을 바꿀 필요도 있다. 장애운동의 경험(내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의 능력이 문제)과 돌봄/감정노동 등에 주목해온 페미니즘의 사유(‘학습도 노동’이라고 주장해온 청소년인권운동의 시선 등)가 긴요하다. 능력의 문제를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능력의 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는’ 사회를 향하는 것으로 문제의 틀을 전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3. 코로나19 팬데믹 속 불평등과 시민사회의 대응

#### 1) 팬데믹 속 불평등한 현실<sup>4)</sup>

한국에서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은 팬데믹 이전 시기부터 꾸준히 재생산되어온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 위에서 발생했고 증폭되었다. 취약계층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포함한 팬데믹으로 초래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방역과 관련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여성은 직장가 가정에서 고된 시간을 보냈다. 고용불안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실업의 위기에 더 빈번히 노출되었고,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고,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했다. 보육시설과 학교가 종종 문을 닫는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담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설에 있는 여성노인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집단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아동 인권의 후퇴기였다. 방역과정에서 아동의 존재는 잊혀지거나 뒤로 밀려났다. 방역정책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취약성과 신체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 변화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학업과 사회적 경험이 모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비장애중심주의는 방역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 대다수가 먹고 씻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를 포함한 기본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생겨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어 장애인은 자신의 주장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연구』 중 7장 결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2022.10, 327~330쪽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팬데믹을 거치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역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팬데믹 초기 바이러스에대한 공포는 중국국적의 이주민들은 경계와 질타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이후 중국국적 동포에 대한 혐오와 낙인으로 이어졌다. 여러 다중 시설에서 '중국인 출입금지' 혹은 '외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리기도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차별에 대응하기보다는 가능한 '외국인'임을 티 내지 않으려 애써야 했다. 한편 2020년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시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언론 보도와 혐오, 편견으로 인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조롱이 심각했다.

한국인과 비교해 이주민은 팬데믹을 거치며 실업률이 더 급격히 증가했다. 체류 관련 정책이 계속 변화하며, 삶이 불안정해졌고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이 양산되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분리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차별행위도 있었다.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컸던 팬데믹 초기, 정부가 제공하는 안내문자나 예방수칙 등 방역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은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 2) 시민사회의 대응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공공서비스기관의 폐쇄로 발생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기도 했고,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공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장애인에 대한 협력적 긴급지원체계 마련을 꾀하는 등 인권 및 사각지대의 시민권 보호와 지원 운동을 지속해서 수행했다.<sup>5)</sup>

---

5) 황필규, 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 과제도 분명 존재한다.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코로나19 인권위기 대응, 더 나아가서는 재난과 인권 대응 민간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단체 간 연대, 중앙-지역 간 연계, 연구자-실무자-활동가 간 연계, 학제 간 연계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제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법제, 정책, 관행, 사례 관련 정보의 집중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 등의 필요성 또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sup>6)</sup> 특히 이러한 재난 상황 및 인권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와 기관 등의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을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대책 본부 활동 당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내 인권담당 부서와 인권침해 대응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지방 정부의 인권조례 내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했다. 한편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이행에서 기관마다 차이가 존재했고, 각 시별 지자체 장이 얼마나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한계도 존재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감염병 관리나 정책은 실질적인 감염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하여 검사하는 불평등한 지자체의 조치를 볼 때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예방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었다.

## 4. 평등이 숨 쉬는 운동으로 정치를 움직이자.

### 1) 국회와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3년간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제정을 바라는 열망과 높은 결로 조금씩 국회를 움직여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주요 정치인들에게 끝없이 물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더는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로 숨을 수 없는 정치의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19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철회 사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는 평등법 제정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선언하

6) 황필규, “코로나19와 인권: 시민사회의 역할”, 국가인권위, 2021 인권 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 및 평등법 제정, 2021. 8. 24. 148쪽.

는 메시지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첫번째 법안 논의인 법안1소위의 평등법 공청회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이끌어낸 명확한 진전이었다.

## 2) 정치의 실패를 확인하고 입법조건을 확인하였다.

2022년 봄 농성 및 단식투쟁은 정치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시도부의 분위기와 메시지는 변화했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지도부가 하자면 반대는 않겠지만 나설 생각은 없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로 인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의 말이 무색하게 입법 논의는 커녕 당내 공론화도 진척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과반의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1대 상반기 국회의 좋은 조건과 더불어 10만행동부터 단식농성으로 사회적 분위기까지 한껏 고조되었음에도 공청회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않은 양당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농성을 통해 확인했다. '정치의 실패'라고 진단한 이 지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1년 남은 21대 국회의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 3) 더 넓은 연대와 조직으로 평등이 살아 숨 쉬게 하자.

지금까지의 투쟁의 역사는 평등의 원칙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결의로 가능했다. 각계의 반차별 운동의 현장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어두운 정세의 전망 속에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오랜 투쟁 속에서 함께 운동하고 있다는 감각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 초 장애인동권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열렬한 신문광고 모금 참여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증축을 위한 투쟁에 대한 연대로 이어지는 연대의 현장은 평등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시민들의 마음을 드러냈다. 대국회 투쟁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감각을 더 이어가는 현장을 통해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구체적인 참여 및 행동을 통해 제정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아나가자.

각 지역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반동성에 단체들이 버젓이 인권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리는 현장을 만들자. 차별금지법을 소수자인 자신의 의제로 인식한 대중, 소수자에 국한된 의제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필수적 과제로 인식한 대중 등 평등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어갈 시민과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구체적인 참여 및 행동을 통해 제정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아나가자. 평등이 살아 숨 쉬는 정치가 되도록 더 깊게 혹은 새롭게 만나게 된 단위/모임/지역과 평등을 향한 연대를 함께 조직하는 계기를 만들고, 각 단위/모임/지역 의제가 차별금지법의 쟁점 및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가자. 각각의 운동이 서로의 용기와 도전을 발견하고 발견해주고, 작더라도 함께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쌓아가며 어두운 정세 속에서도 평등의 전망을 함께 잇자.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발제 국제인권]

## 국제인권법적 의무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국제인권법적 의무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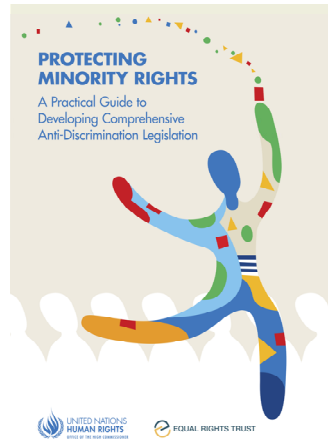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는 커져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 및 지역인권체제에서도 이 목소리에 부응했다. 모든 조약기구에서 협약이행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전문가들은 조약이행의무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당사국에게 권고했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하 ‘UPR’)에서도 검토국가들은 당사국에게 입법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한 국가들이 남아있다. 입법 지연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촉구<sup>1)</sup>하는 동시에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최소한 당사국이 “어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혹은 ‘검토 중이라’) 입법이 지연 중”이라는 이유를 댈 수 없도록 말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의날을 앞둔 2022년 12월 7일 “소수자 권리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용 지침서(Protecting Minority Rights: A Practical Guid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1) 대한민국 국회에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https://www.ohchr.org/en/press-briefing-notes/2021/12/press-briefing-notes-republic-korea>  
<https://equalityact.kr/press1220/> (비공식 국문본)

Legislation) (이하 ‘지침서’)를 출간하며, 유엔 독립전문가들의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에게 인권책무에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밝혔다.<sup>2)</sup>



이 지침서는 차별금지법이 나아갈 바에 대한 미래적 비전을 담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국제인권법의 현재적 해석으로 철저히 ‘당사국의 의무사항’만을 담은 것이다. 따라서 지침서는 입법을 위한 실무서이면서 당사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의무와 그 내용에 대한 직접적 유권해석 문서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발간 성명에서 “지침서는 모든 사람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no one is left behind)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필수 범위, 구조,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법적 기준을 종합하고 조화시켰습니다. 규범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 외에도 구체적인 국가별 사례와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정부, 국회, 국가인권기구, UN 직원, 시민사회 대표, 소수자 및 기타 인권 옹호자들을 위하여 명확하고 명백하며 포괄적인 지침에 대한 오랜 숙원을 채웁니다.”라고 밝혔다.

2)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2/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legislation-must-be-priority-say-un>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역사무소 등을 통해 지침서를 소개하고 실무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특히 올해 유엔의 다양한 인권체제에서 인류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협약 등을 통해 스스로 천명한 약속인 평등과 반차별 의무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를 입법하지 못한 국가들)은 계속 조명될 예정이다.

이번 발제문에서는 지침서를 중심으로 첫째, 국제인권의무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둘째,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요건, 셋째,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국제인권의무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 왜 국제인권의무로서 보아야 하는가

한국이 비준·가입한 국제인권협약<sup>3)</sup>은 헌법<sup>4)</sup>에 따라 국내법의 일부이다. 따라서 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체제의 의무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입법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 
- |                         |                                   |
|-------------------------|-----------------------------------|
| 3)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 (가입일 1990.4.10. 발효일 1990.7.10.)   |
|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 (가입일 1990.4.10. 발효일 1990.7.10.)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 (가입일 1990.4.10. 발효일 1990.7.10.)   |
| 인종차별철폐협약                | (가입일 1978.12.5. 발효일 1979.1.4.)    |
| 여성차별철폐협약                | (가입일 1984.12.27. 발효일 1985.1.26.)  |
| - 선택의정서                 | (가입일 2006.10.18. 발효일 2007.1.18.)  |
| 고문방지협약                  | (가입일 1995.1.9. 발효일 1995.2.8.)     |
| 아동권리협약                  | (가입일 1991.11.20. 발효일 1991.12.20.) |
|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 (가입일 2004.9.24. 발효일 2004.10.24.)  |
|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 (가입일 2004.9.24. 발효일 2004.10.24.)  |
| 장애인권리협약                 | (가입일 2008.12.11. 발효일 2009.1.10.)  |
| - 선택의정서                 | (가입일 2022.12.15. 발효일 2023.1.14.)  |
| 강제실종방지협약                | (가입일 2023.1.4. 발효일 2023.2.3.)     |
- 4)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법관할을 넘는 보편적인 기제로 이해된다. 필수적이지만 평등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은 아주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평등을 완벽하게 이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인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과 시행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는 실무적으로 발전하며 서로 참고할 수 있는 상호적 대화이다. 국제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작업도 소중히 참고할 수 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합의(consensus)

“인종주의, 불관용, 차별은 모든 사회에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러스의 책임이 있는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종이나 민족, 연령,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엔 조약기구, 정기적

##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기 도입 여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 특정 사유, 차별 행위 중 일부(노동, 교육 등)만을 규율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구분된다. 헌법이나 개별법에 있는 반차별 조항과도 구분된다.

지침서는 당사국은 당연히 특정 집단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기타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일반적인 반차별 조항의 채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의무와 충돌하지 않고 이를 면제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된다.

### 3. 국제인권의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요건

#### 포괄적이기 위한 조건들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요건이라고 보며 해당 항목에 대해 자세히 실시하고 있다.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고 확장가능한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차별의 모든 형태와 표현을 금지해야함
-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정의와 일치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함
-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노출된 개인과 집단의 평등 실현을 위해 고안된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을 명시적으로 허용, 요구 및 제공해야함
- 접근성을 보장하고 평등의무를 신설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평등권과 반차별권리의 실현을 운용할 수 있게 함
- 효과적이고 위하력이 있으며 비례적인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피해자에 대한 인정·보상·배상, 관련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등을 제공해야 함
- 진정인이 일응 차별 추정 사례를 제기한 후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조항과 불이익 금지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의 접근 보장을 위한 필요한 절차상 보호 장치 및 개정을 수립할 것
-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 기능, 권한을 갖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평등 기구의 설립을 제공할 것
-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고 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타 이행 조치의 채택을 의무화할 것. 여기에는 차별적인 정책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식별 및 방지하고 평등 실현에 필요한 영향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해 공법 및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영향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 차별금지

양대 조약에는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지만,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존재하는 정의와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를 종합하면 유엔인권협약상 차별에 대한 정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법으로 규정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하나 이상의 차별금

지사유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며 차별금지에는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괴롭힘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제적 혹은 가상적 ‘비교집단’의 설정은 법적 정의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며, 사건 판단에 대해서도 비교집단 설정의 어려움은 판단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차별과 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소, 인적 범위(누가 보호되는가), 권리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어떤 행동으로부터 보호되는가), 물적 범위(어디서 보호되고, 누가 그 의무를 가지는가), 행위의 정당화 범위(어떤 차등대우는 왜 허용되는가), 가 분명히 결정되어야 한다.

## 인적 범위

차별금지사유는 지위, 정체성, 특성, 신념 등인데 이 목록은 포괄적이며 확장 가능해야 한다.

1948년 인권선언 이후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이해는 계속 진화해왔으며, 인권선언, 인권협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차별금지사유 외에도 위원회는 개인진정, 일반논평, 최종권고 등을 통해 차별금지사유를 확장해갔다. 특히 ‘기타 신분’라는 조항 형식은 추후 동일한 성질의 차별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회권 일반논평 제20호는 “차별의 성질은 맥락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제2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유에 비견할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차등적 대우들을 포착하기 위해, “기타의 신분”이라는 사유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차별금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령; 출생; 법적, 가족, 보호자 지위; 피부색; 카스트를 포함한 혈통; 장애; 경제적 지위; 민족성;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 질병에 대한 유전적 또는 기타 소인; 건강 상태; 원주민 기원; 언어; 결혼 여부; 모성 또는 친자 관계; 이민자 신분; 소수자 지위; 출신국; 국적; 거주지; 인권 옹호자 지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치적 소속을 포함한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임신; 재산; 인종; 난민 또는 망명 상태; 종교 또는 신념; 성별과 젠더; 성별 특성; 성적 지향; 사회적 출신;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신분.

한편, 금지되어야 하는 차별에는 당연히 연계(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이 겪는 차별)와 간주 차별(예. 실제 로마인이 아니지만 로마인으로 오해되어 받은 차별)도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최근 수십 년간 차별이 여러 사유에 기반해서 복잡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엔조약기구들은 개인통보 사건 등에서 교차성과 다중적 차별을 다루고 있다. 중첩된 차별은 두 가지 이상 별개의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하여 발생하며 개별차별금지법에서도 이를 대응할 수 있다. 교차차별은 두 가지 이상의 차별금지사유에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차별을 만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보호의 공백에 생기게 된다.

## 금지되는 행위

협약은 “모든 종류의 차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차별금지 사유에 기반한 괴롭힘,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분리(segregation), 보복조치 등 크게 6가지 종류의 차별을 인지하고 있다. 차별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표현에서 보듯이 차별에는 동기나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데 피해와 속성 사이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 물적 범위

물적 범위는 2가지로 작동한다. 첫째, 모든 기본권과 인권(예. 집회의 자유, 사회보장 권)에 관한 반차별의 권리<sup>5)</sup>, 둘째, 독립적인 권리로서<sup>6)</sup>, 법에 규율되는 모든 범위의 행

- 5)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등
- 6) 자유권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위(예. 거래 등 사적영역)에 대한 반차별의 권리를 통하여 규정된다. 국내 입법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차별금지법 제5조 제1항이 “이 법은 국가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는 표현으로 물적 범위를 분명히 한다.

## 정당화 사유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예.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관련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 한편 이 판단은 차별형태와 금지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직접 차별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례성 평가는 괴롭힘과 보복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법접근에 대한) 절차적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 항변을 할 수 없다.

EU 등에서 좁게 몇 가지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예외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은 그 외의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는 예이며, 예외를 늘리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볼 수 없다.

## 적극적 조치

평등권은 적극적 조치의 채택을 요구한다. 적극적 조치에는 불평등을 줄이거나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입법, 행정, 정책 조치가 포함된다(예.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여성할당제, 교육기관의 인종 할당제). 다만 이러한 조치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평등을 증진하거나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

적극적 조치가 불평등하거나 분리된 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택된 적극적 조치 조치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평등의 목적이 달성되면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반드시 기간이 짧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평등 의무

국가는 위의 조치들 외에도 차별을 제거하고 참여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접근성은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통신, 작업장, 교육, 의료서비스, 대중공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무이다. 국가는 접근성에 대한 최소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접근성 의무는 당사자의 요청과 상관없는 사전적 무조건적 의무이다. 접근성 표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차별의 한 형태이다. 둘째, 법적 평등의무로서 국가는 1) 차별의 예방 의무, 2) 조직적 의무, 3) 주류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어떤 방식으로 평등의무를 수행할 지는 국가가 재량을 가지나 이 의무 수행의 최소한의 효율성은 보장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구제책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못한다. 반차별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위하력이 있으며 비례적인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정·보상·배상, 관련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등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을 시정, 저지,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별을 판단하는 법원과 기구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집행과 정의 접근

### 평등 기구

### 이행

### 차별적인 폭력과 증오 범죄

### 차별과 표현

### 평등, 포용, 다양성을 증진하기

#### 4.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이 국제인권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 박주민 / 권인숙 의원안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직접차별	직접차별	직접차별	직접차별
간접차별	간접차별	간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괴롭힘	괴롭힘	괴롭힘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
복합차별 (차별의 개념)	X	복합차별 (차별 판단)	X

차별금지/평등법상 괴롭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하는 행위

「차별금지법안」(장)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사표시를하는행위 「평등법안」(이,박,권)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근로 자 또는 업무관련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행한성적언동또는요구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장혜영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이상민, 박주민안 유사)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2조(입증책임의 배분) 1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 에있어서차별판단의대상이되는행위가있었다는사 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2제1항에따른행위가성별등을 이유로한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 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00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1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장혜영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불이익조치 금지	○	○	○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시 효과	불이익조치 무효	불이익조치 무효	불이익조치 무효
	-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입증책임 전환	-	-	불이익조치가 진정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

차별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꾸어내기

- 제2장국가및지자체등의차별시정의무

이법에반하는기존의법령,조례와규칙,각종제도및정책을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 등

## 5. 나가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반차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수십 년이 된 것이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불평등과 차별이 주는 문제에 대해 새롭고 가혹한 성찰을 주었으며 긴급성은 더욱 요구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팬데믹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이 새롭게 차별적 위협을 주고, 기후변화가 이미 존재한 역사적이고 현재적 차별에 더해 소수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사무소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제인권 의무는 명확하다. 사회적 필요성도 분명하다.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법안은 국제인권 의무 준수하는 시작으로 모자람이 없다. 오직 의무의 이행을 방기하는 부작위만이 있다. 입법의 물결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이며 더는 시간이 없다. 부디 21대 국회가 입법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2부\_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패널토론 1]

# 사회적 합의에 평등법이 밀려나는 사이, 학생인권은 어떻게 혐오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는가

우 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사회적 합의에 평등법이 밀려나는 사이, 학생인권은 어떻게 혐오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는가

우 돌<sup>1)</sup>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새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교육에 관련해서는 15년 전 교육과학부 시절 장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국회에선 소수인 여당이 지방 선거 결과 지자체 의회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간 ‘진보적’이라 불리며 명맥을 이어 온 정책들이 잇따라 폐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후퇴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보수·중도 교육감들은 너도나도 ‘진보 교육감 지우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발 맞추듯 혐오 세력들은 온라인 참여로 허들이 낮아진 주민발안 청구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여기저기서 발의하였다. 2023년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안 청구가 성사되어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주민 발안이 시작되었다.

###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계속되어 온 학생인권운동의 성과이지만, 사실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당시만 해도 조례의 제정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했고 제정을 요구했으나, 전례가 없던 학생인권조례가 진보교육감의 의제로서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도전과 시간이 필요할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광주와 서울에서 2011년 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는 곧 1기 진보 교육감 정책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교육감 선거의 공약 중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빠짐없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 이 글은 ‘오늘의 교육(교육공동체 ’벗‘) 3,4월호에 기고한 글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 상황을 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정착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진보 교육감이 3선을 한 강원, 전남, 경남, 세종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육청이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육청이 애초에 추진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공동체인권조례’, ‘학교구성원인권조례’ 같은 유사 학생인권조례를 꺼내 드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까지도 경기, 광주, 전북에서만 교육청이 발의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주민 발의로 진행되었던 서울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을 오가는 상황에서 겨우 조례가 공포되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마자, 현 교육부 장관이자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는 서울,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교 규칙 기재 사항에 ‘두발, 용의 복장’ 항목을 덧붙여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이후에도 내내 학생인권조례 안착에 발목을 잡아, 사립 학교 같은 곳들에서 공공 연하게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근거가 된다. 전국적으로도 충북과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가 있었지만 보수적인 도의회에서의 부결로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2019년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해 보았지만, 반대 세력의 격렬한 저지와 더불어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 제주와 충남은 2020년대가 되어서야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여 겨우 통과되었다.

이런 험난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으로서 수월하게 시행되거나 정착된 것이 아니었다. 경기나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교육부의 무효 소송과 상위법 개악 속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표류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것은 불과 6~7년 전부터였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그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광역 지자체가 아직도 태반이나 남아 있다.

## ‘진보 교육감’과 ‘촛불 대통령’의 시대에도 유보되었던 학생인권, 혐오세력의 먹잇감이 되다

‘진보 교육감’ 시대에도 선거권을 가진 비청소년 유권자들이 우선시되었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의제와 목소리는 계속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이다.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무산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의 10%도 안 될 혐오 세력의 목소리에 진보 교육감이나 지자체 의회는 늘 끌려다녔다. 학생에게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두발·복장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에 성소수자 학생도 포함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강력히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이 선거권이 있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힘을 가졌다. 그런 단체들이 공청회를 파투 내고, 쫓기 대회를 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위축되어서는, 아무 것도 되는 것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라는 답론만 무성해졌다.

촛불 대통령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부에 거창하게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지만, 아무 힘도 의지도 없는 외부 사람을 영입하였고, 집권 초기 추진을 약속했던 ‘학생인권법’이나 ‘아동·청소년인권법’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집권 말기에 이명박 정권 중 개약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하나만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리고 끝났다.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법령을 고친 것이야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잘 알고 지키면 좋고, 모르고 안 지켜도 크게 불이익은 없는 그런 법이 되어 갔다. 그러다 보니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교사는 학생을 ‘잡지’ 못하는,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교사 사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 교육하지 말라는 소리’라는 냉소가 흘러 다녔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는 ‘학생을 잡아 주는’ 학교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로 이미지화되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존감이란 말이 유행하는 시대에도 스스로를 믿지 못해 학교가 잡아 주기를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침해를 교육이라고 부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교사에게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노는’ 학생들만 와서 학교가 엉망이 된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수많은 학교에는, 학교 밖이라

면 유신 정권 때나 있던 치마 단속이 여전히 존속했고, 군대나 마찬가지로 학교의 일상 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소지나 사용을 금지당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저항이 계속되자, 이는 학생인권 강화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한다는 담론의 토양이 되었다. 요컨대, 학생인권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서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면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왜 우리만 피해자가 되어야 하나며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놓고 잡니 마니 하는 와중에 학교에 대한적인 문화와 관계는 자리 잡지 못했다. 이것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져, 학생인권 존중이 교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교 안에서 성추행, 성희롱, 차별적 언행 등 인권 침해들이 쌓이고 깊어 터져 ‘스쿨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학교는 스쿨 미투로 인해 교권이 실추, 침해된다는 방식으로 응대했다. 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은 학교 문화에서 학생에게 일어난 피해를 공론화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교사를 겁주는 것으로만 느껴진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결국 스쿨 미투 운동은 학교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주목받았지만, 학교 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인권이 살아숨쉬려면 어느 공간이든 최소한의 연로를 막지 않아야 하고, 신체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수직적인 문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지역, 몇몇 학교의 소수의 공간에서만 겨우겨우 통용되는 학생인권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현실로 생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권 존중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분노를 일으키고, 교사들에게는 공공연한 냉소와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차별과 혐오를 숙주 삼는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없이 쟁송만 남아

학생인권조례가 본래 지향한 학교 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만, 사회에서 보장하는 만큼의 인권을 학교안에서도 보장받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학생들 간 또는 학생-교사 간의 갈등도 인권을 기준 삼아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해결 가능한 길을 만드는 것이다. 즉, 학생이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토양에서 폭력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권위를 가진 교사조차도 폭력으로는 학생을 다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라는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권과 인권 침해라는 언어에 익숙해질 때, 차별이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고, 성찰과 문제해결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 만들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차별과 폭력 등은 학교 안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묵살되기 일쑤이고 누적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이 있거나 침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제도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 간의 폭력은 무조건 학교폭력 관련 절차로 해결하고, 교사와의 갈등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뒤적이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의 갈등 해결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와 망칠 수 없다는 다짐 속에 변호사를 찾았고, 생활지도부에 갈 때부터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학교는 몇 년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교육청으로 간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원화되었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발견되었을 경우 그 폭력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하에 기본적으로 신고와 분리를 목표로 설계된 것이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 잘 맞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 행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구나 기준이 없기에,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관련 법만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는 혐오 세력이나 보수 정치 세력, 일각의 교사단체 등은 이러한 상황을 학생인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내막을 짚어 보면 사실은 학생인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까닭에 불거지고 심화된 문제들을, 오히려 학생인권이 과잉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성폭력 등 젠더 폭력이 불거지고 있는 현상을 페미니즘의 문제라고 왜곡하고 치환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 혐오, 차별, 폭력의 끝은 입시에 줄긋는 엄벌이라고 배우는 청소년 유권자에게 학생인권법과 평등법 조차 없는 사회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파급력을 가장 잘 알아 준 것은 혐오세력을 포함한 보수적 정치 세력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았고, 지금도 자신의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타깃으로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써먹고 있다. 그에 반해 진보 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 상징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착화할지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권력을 잡았을 때조차도 제도적 안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일반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등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현 야당에겐 지나간 의제이자 꺾끄러운 의제로, 여당에겐 아직도 자신들을 뭉치게 하는 의제로 존재하는 학생인권.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는 그 두 세력이 그토록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일매일 당면한 삶의 문제이다. 새 학교 입학 앞두고 학생들은 아직도 네이버 지식인에 그 학교가 학생들을 박세게 잡는지 안 잡는지를 묻는다. 당국은 챗GPT를 교육에 도입하자고 하면서도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의 관행에는 무관심하다. 스쿨 미투에 대한 관심이 꺼진 사이, 여전히 학생들은 복장 단속 때면 잠바의 지퍼를 내려 교복 재킷과 그 안의 티셔츠를 보여 줘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학생들에게 똑똑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수 세력이 소환한 학생인권이라는 이슈에 어떤 행보를 보여 줄까가 결국 학생을 누가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때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 세대라고 추켜세웠던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거대 야당이 보여 줘야 할 때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패널토론 2]

## 월 100만원 노동에 담긴 차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월 100만원 노동에 담긴 차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1. 이주가사노동자, 월 100만원 노동이 가능한 법?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주 가사노동자를 월 100만원에 고용할 수 있게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그것이다.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제6조를 수정하여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본다’를 추가하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당연히 최저임금법 등 여타의 노동관계법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되고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된다. 조정훈 의원은 이 법에 의한 가사노동자마저도 법 적용을 제외하여 월 100만원 임금으로 가사노동자를 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안. 본 글에서는 이 법안에 담긴 중첩된 추악한 차별을 살펴보려 한다.

### 2. 가사노동자의 현실

가사노동자들은 92.2%가 50대 이상이며 주당 평균 27.2시간을 일하고 월평균 108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는 10만 7천명으로 집계되나 이는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4-5만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장규모도 공식 통계가 없이 약 1.4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뿐이

다. 이렇듯 공식 통계마저 부재한 것이 가사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는 노동자성이 부정되면서 비공식 노동자 지위 탓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미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 호출노동의 불안정성, 4대보험의 부재, 보호망 없는 노동현장 등 가사노동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낮다. 심지어 직업을 칭하는 정확한 공식 호칭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조차도 내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이주 가사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강남이나 분당에 가면 조선족 이모, 필리핀 내니를 흔히 볼 수 있다고들 한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이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곳들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노동환경에서 어떻게 살며 노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나 연구는 몹시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제한된 이주 노동자들만이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까닭에 불법체류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 다수일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마저도 알 수 없다. 이주가사노동자의 규모는 3만-8만명(이혜경(2012)), 6천-6만명(모종린 박민아(2017))<sup>1)</sup>으로 추정하는 이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3. 여성의 노동, 가사노동에 대한 차별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무급으로 해 왔던 노동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이 노동시장에 등장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매길 때 심각한 평가절하가 발생한다. 무급노동이었다는 이유가 임금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된다. 당연하게 여성이 무급으로 해 왔던 노동. 이는 그렇게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다시 가정의 여성에게 무급으로 요청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착각을 가져온다. 하지만 무급노동이 임금노동이 된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 내에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임금노동을 통해 더 많은 소득 혹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집 안의 노동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임금노동이 된 가사노동은 무급노동과는 다르지만 같은 노동으로 취급된다.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기 전 69년간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박

1) 최영미,윤지영,표대중(2017),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4p

탈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는 없었다. 2011년 ILO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이 채택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협약은 한국에서 비준되지 않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숙련이 필요 없는 쉬운 노동이라는 생각도 여기에 보태진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숙련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노동이다. 중장년의 가사노동자들이 가사노동을 척척 해내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정에서 무급가사노동에 오랜 기간 종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보다 육체적 힘이 많이 소요되는 노동이다. 본회가 2014년 실시한 직무분석 결과, 가사노동은 7대 영역 70가지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노동을 3분 안에 마쳐야만 계약된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내내 종종거리며 온 집안을 뛰어다녀야만 했다. 가사노동자들은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높은 곳을 청소하다가 넘어지는 등 위험은 상존해 있다. 그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없다. 작업공간이 가정이라는 사실은 가정의 안락함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져 착시를 일으킨다. 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은 험하고 힘든 노동이다.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육체를 쓰는 일은 넓은 공간에서 몸을 크게 휘둘러 쓸 수 있는 노동과는 다른 어려움을 갖는다. 아이나 환자를 돌보는 일 역시 고된 노동이다. 감정과 머리, 육체를 동시에 써야 하는 에너지 소모가 큰 노동이 된다. 온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는 환자를 돌려 눕히는 일은 실제 환자 무게의 몇 배나 무겁게 다가온다. 아이를 돌볼 때는 한 아이를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어 올려야만 한다.

여성의 노동이라는 점도 노동의 가치를 매길 때 평가절하당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라 평가절하된 여성의 노동은 자본에 의해 의도적 평가절하가 유지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가사노동은 아마도 그 첫 번째 희생자일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은 쾌적한 일상 혹은 일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잘 해야 본전이다. 우리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어머니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이다. 가사노동은 없어져야 깨닫는 노동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노동이다. 다만 늘 그림자처럼 그저 누군가 -주로 여성- 이 해 왔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받을 뿐이다. 다른 그 어떤 노동에 대해 감히 월 100만원 월급을 법제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이라서, 가사노동이라서 이렇듯 함부로 차별하는 것이다.

### 3. 인종, 국적 차별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투쟁과 함께하는 활동가, 법률가, 시민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조정훈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쌓아온 모든 노력을 퇴행시키는 일이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겠다는 논리는 인종과 국적에 대한 차별이다. 한국에서의 가사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는 입주의 비율이 높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시간제 출퇴근 형태로 일하고 있다. 입주가사노동자들은 퇴근이 없기 때문에 휴식과 휴가를 취하기가 어렵고 가정 내에서 부실한 식사와 잠잘 공간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은 내국인 가사노동자와의 차별에 불만을 토로한다. 지금도 이주가사노동자들은 내국인 가사노동자보다 더 긴 시간 일하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고용주들은 이들에게 적게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또한 이주가사노동자에게 더 긴 시간의 노동을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6일 근무해도 170인데 한국분들은 180이래요. 나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거는 우리가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데, 5일 근무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게. ...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 말로는 부당대우인데, 한국분들 말로는 아무튼 교포들한테는 적게 준다는 인식이 있다고 내놓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요.”(정)<sup>2)</sup>

### 4. 제국주의적 수탈의 합법화

여성의 임금노동은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여성이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

2) 최영미,윤지영,표대중(2017),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47p

어색한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부담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임금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노동을 지속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고 다른 계급의 여성노동자에게 가사노동을 맡긴다. 부유한 나라의 시민들은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을 떠넘기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기준으로 6,710만 명의 전세계 가사노동자 중 1,150만 명을 이주노동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착취당하고 있음을 뵈히 알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를 눈 감고 있다. 적극적인 노동의 의지를 갖고 자국을 떠난 여성들은 먼 타국에서 국가가 조장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자유로운 피착취 시민-노동자와 종속적 피수탈 예속민을 구별하여 첫째 부류의 지배가 동의와 합법성으로 은폐되어 있다면 둘째 부류의 지배는 뽼뽼하게도 노골적인 억압에 의지한다<sup>3)</sup>고 지적한다. 전세계적인 구도로 짜여진 착취와 수탈 시스템에서 이주가사노동자들은 가장 하위에 놓이게 된다. 여성이어서, 이주민이어서, 다른 인종이어서, 가사노동자여서. 첩첩이 차별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선주민을 보호하는 인권조항이 가득한 법들은 이주가사노동자들을 배제한다. 마치 그것이 국가적 과제인 양 말이다. 조정훈 의원이 100만원 미만의 임금으로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취지설명도 맞벌이 돌봄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너무나 뽼뽼하고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다.

이 법은 발의 상태일 뿐이지만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이는 이주가사노동자들을 식민화하여 제국주의적 수탈을 합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노골적인 차별선동이다. 차별을 통해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도 게으른 발상이다. 이 법은 분명 폐기되겠지만 이 안에 담긴 혐오와 차별의 추악함은 기록되어 역사적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낸시 프레이저(2023), '좌파의 길 - 식일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p91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패널토론 3]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 기독교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 기독교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 어디일까. 아마 대다수가 개신교를 지목할 것이다. 그만큼 개신교 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가진 세력이 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인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1%, 반대한다는 응답은 38.2%로 나왔다. 이듬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42.4%, 반대 31.5%로 조사되었다. 개신교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의지가 더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개신교=차별금지법 반대’의 등식이 자연스러운 건 일부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들의 특징은 4.15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추종하는 등 정치적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이며, 잘 조직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전화/팩스/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력과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이들(60대 이상, 남성, 대형교회 중심)이 개신교 각 교단의 대표와 주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반대의견이지만 개신교 전체의 의견인 듯 보여지는 것이라.

2007년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역사가 있었고, 21대 국회들어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의로 시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권고안과 국민의 청원 10만명 달성, 민주당의 발의 등이 이어지며 호기를 맞이하였으나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사이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고 학습한 극우보수 개신교 세력은 교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0년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이후 개신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자라나는 독소의 징후들, 그리고 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인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교계의 혐오적 선동정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 1. 교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 (1)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주지하듯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영역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는 극렬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온갖 가짜뉴스들이 설교를 통해,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법이라 칭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역차별을 받고 동성애 국가가 된다는 식의 선동이 난무한다. 근거로서 가져오는 해외 사례들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들이다.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은 차별금지법 관련 좌담회에서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내보냈다가 제재 조치를 받기도 했다.

주요한 개신교 교단들은 총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하 예정합동) 총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4건과 관련해, 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 통합(이하 예정통합) 총회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등 (교회) 주변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고 죽도록 충성을 다 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역시 2022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 중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와 대한성공회 정도가 차별금지법 찬반 관련 교단의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KK)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감리회와 예정통합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동성애 옹호'를 이유로 NCKK 탈퇴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의체의 수장인 총무가 지난 21일 사임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1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협의체의 앞날

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수화된 개신교 각 교단들이 인권에 대한 외침에 재갈 물리는 형국이다.

교단의 공식적인 차원 뿐 아니라 교단 내 차별금지법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임의단체들도 여럿 생겨나고 있으며 각종 기도회, 세미나를 열고 공식 모임마다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을 만들고 차별금지법 찬성을 하는 이들을 압박하는 일들을 한다. 2023년 2월에는 예장통합·감리회·기장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연대’라는 단체를 창립하기도 했다.

## (2) 기독 정치인들의 활동

이렇게 대부분의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자 대선 혹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 표심을 잡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정책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명 참석했는데, 어느 당이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며 양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일이 없다는 해명 일색이었다. 2022년 12월에 열린 한국교회총연합 회장 취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민주당 일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의원이 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스럽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특히 민주당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별금지법 걱정 말라. 제가 원내대표 당시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정했다.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제가 (국회에) 남아 있는 한 국회에서 절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1)</sup> 이제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보수개신교의 표를 의식한 기독 정치인들의 활동이 교계의 보수적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1) [출처: 뉴스앤조이] 이영훈 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취임…기독 국회의원들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게 막겠다’

### (3) 동성애 처벌법 제정 및 내부 검열

2015년 감리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소위 ‘동성애 처벌법’<sup>2)</sup>을 제정하였고, 2017년 예장통합에서도 관련법<sup>3)</sup>이 만들어지면서 각 교단에서 반동성애, 반차별금지법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반퀴어 운동이 교단 내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각 교단에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생겨나고 반동성애 임의단체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평신도단체(장로교전국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 등)를 중심으로 이런 집단들은 교계 밖으로는 반퀴어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퀴어퍼레이드 반대집회 등의 외부활동을 하면서 교계 내부에서는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향한 징계와 처벌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9월 감리회, 침례교,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가장 섬돌향린교회故임보라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이어 예장통합을 비롯해, 백석대신 등이 이단으로 지정하였다.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퀴어신학을 이야기한다는 이유였다. 2018년에는 장신대 신학생들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을 드리고, 예배 후 무지개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하고 군목시험에 합격한 이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한편 교단은 소속 목회자와 신학자에 대한 처벌도 이어갔다.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이동환 목사는 연회재판에서 정직 2년의 처벌을 받았고, 대전신학대학교 은퇴교수인 허호익 교수는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와 인터뷰, 강의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옹호자라며 예장통합으로부터 면직·출교되었다.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다는 인터뷰를 했던 감리회의 중진 목사가 재판 직전까지 가는 곤욕을 치루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감리회에서 준회원 진급 면접 중 ‘동성애를 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답한 전도사가 진급에서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

교단 신학교 또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보수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감리교신학대

- 
- 2) 재판법 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13항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 3)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의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학교에서는 한 동아리가 주최하여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이요나 목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열었고 100여명의 인원이 모였다. 위에서 언급한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이후 장신대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입학금지'하는 법이 생겼다. 에타라고 불리는 학교 별 익명온라인커뮤니티에는 동성애 혐오성 발언이 쏟아진다. 각 신학교 교수들 역시 성소수자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감신대의 경우 강의시간에 다양한 신학을 소개하며 퀴어신학을 언급했다가 강의를 들은 학생이 문제를 삼아 곤욕을 치른 사례도 있었다. 2023년에는 감리회 이동환 목사를 교단에서 '동성애 옹호'로 추가 고발하는 일이 있었으며, 총신대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무기정학의 징계계를 받는 등 교계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와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

## 2. 교계의 움직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신교 내의 이러한 반대의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차별을 조장하기는 하지만 혐오의 역동은 교계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수 개신교 신학은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며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그렇지 못한 곳을 '세속적인 곳,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교회의 사명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영역'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소위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데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신념체계 안에서 이들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는 지극히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래와 같은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 (1) 지역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

거리를 지나다보면 극우 개신교 단체들에서 부착해 놓은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을 살펴보면 현재 이들이 어떤 아젠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근래에는 거의 학생인권조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한차례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제정되는 사태를 겪은 충청남도의 경우 다시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은 인권조례가 '다양한 가족 구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조례1조)와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이슬람 문화를 충남도가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 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섹스, 임신, 출산, 교사·부모 고발, 교실 산만,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며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4)</sup> 보수 개신교 세력이 폐지안을 발의하고 서명 운동의 화력지원을 보수정당 도의원들이 심의하는 모양새로 충남의 두 조례는 다시 폐기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역시 ‘나쁜 인권 퇴출’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신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한 상황으로 폐지의 기로에 놓여있다.

## (2) 반동성애 단체들의 인권센터 · 청소년 교육기관 진출

이 뿐만 아니라 개신교 기반 반동성애 성향 단체들이 대전시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2년 11월 대전시인권센터 민간위탁 선정 결과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송춘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선정 기관으로 발표되었으며 신임인권센터장에는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선임되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해온 기관이며, 대표 목사는 지역에서 혐오와 반인권 활동을 주로 해온 인물이다. 센터장인 김영길 대표 역시 홈페이지밖에 없는 기관을 만들어 반동성애, 반인권활동을 주로 해온 인사이며,<sup>5)</sup> 취임 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토론회에 인권센터장 직함을 들고 강사로 참여하려다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저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 교육기관까지 위탁받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인 남승제 목사는 국가인권기본정책,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반대 활동을 맹렬히 전개해 왔으며, 지난 2016년 4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당시 폭력난동에 가장 앞장선 당사자이기도 하다.<sup>6)</sup> 기독교 언론

4) [출처: 뉴스앤조이] 인권조례 '폐지' 부르짖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에 공개 토론 제안한 진보 정당

5)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주관: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14.

[뉴스앤조이]의 취재결과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성품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는 반동 성애 진영 활동가들이 등장했고, 성교육과는 거리가 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었으며 교육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언급들이 있었다.

“성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다.”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스트들의 집합소다. 굉장히 좌경화돼 있고 어떤 사람은 북한과도 연결돼 있다.”<sup>7)</sup>

이에 넥스트클럽 대표는 2019년 이후 반동성애 활동을 하지 않고, 원래 설립 목적인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받은 후 내부 강사단 개별 면담 자리에서 젠더, 성인지갑수성, 성적자기결정권, 섹슈얼리티 등을 4대 금칙어로 공표하고 일방적으로 네 명의 강사단을 해촉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보수 개신교 세력을 위시한 활동들은 비단 일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기관과 단체들에게 성공적 사례로 관심을 모으며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반인권적 성향을 가진 특정 종교 세력이 우리 사회의 인권기관을 장악해가고 있으며, 공교육 현장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교육을 담당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지자체 위탁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곳은 더 이상 공교육을 담당하는 곳의 수탁을 받지 못하게 제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보수 개신교 집단을 중심으로 한 혐오·차별 선동과 내부의 검열·차별 사례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빨갱이 물리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한국 개

6)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주관: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45.

7) [출처: 뉴스앤조이] [뉴스레터 '치치독' 116호] 인권·성교육 센터 접수한 반동성애 진영

신교는 이제 혐오의 대상을 성소수자, 이슬람, 이주민과 난민으로 넓혀가며 끊임없이 적을 상징하여 내부를 결집시키려 한다. 이런 교회의 움직임은 극우보수적 정치세력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교육 영역에 진출하여 왜곡된 성 인식을 가르치며, 교회를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 혼전순결, 낙태반대 등의 내용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sup>8)</sup> 문제는 당장 이러한 혐오의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표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2022년 반성소수자 법안 315개가 발의되어 29개가 제정되었고, 2023년 현재까지 12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뿌린 혐오의 씨앗은 미국 내 보수 개신교 세력의 지지를 얻으며 인권을 후퇴시키고 지금까지 미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미국의 동향에 크게 영향받는 한국 보수개신교는 향후 비슷한 활동들을 떠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의 전광훈 목사 사태로 보여지는 바 보수(극우)개신교 세력의 영향력이 집권여당에 까지 미치고 있는 판국에 국회는 앞날을 내다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교계와 정치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혐오증오선동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바 앞으로 1년 남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최소한이며 더욱이 종교를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사회와 종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는 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인권과 평등의 중요한 변화는 분명 종교, 특히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한국 개신교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압박들이 있겠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한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음다해 부탁드립니다.

8) 대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봉사하러 온 초등학생에게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제작한 자극적인 내용의 '반동성애 강연 영상'을 보여주었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되어 보육교사와 원장 자격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패널토론 4]

## 평범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평범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장애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한 인 간임을 포기해야만 한다. 혹은 비장애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 던지 해야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일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되었다. 벌써 법이 제정되었는지 15년인데 여전히 장애인의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15가지 차별금지 영역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60.3%)에서 차별을 가장 많 이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이외에도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융상 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등에 대해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1년 12월 6일부터 매일 아침 혜화역 승 강장에서 아침 선전전과 ‘장애인도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선전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아니 비장애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장애인에게 보내는 시선조차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런데 지하철 운행이 지체라도 되면 장애인에게 퍼붓는 혐오는 엄청났

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전대표가 전장연에게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잡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혐오 발언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었다. 장애인들은 시민들의 욕설에 눈물과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매일 아침 지하철 승강장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SNS는 물론 전장연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전장연 회원 장애인들은 시민들의 욕설과 혐오에 혼자서 거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무서움이 앞섰다. 정말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언론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부추기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장애인이 지하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목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정치인의 혐오 선동에 불을 지르듯 언론과 정치인의 무지와 무책임 속에 시민들은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이준석** ●

3월 25일 오전 8:45 · 🌐

...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의 박원순 시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몇달 전부터 해당 단체 간부들에게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등을 적극 투입하여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평시에 비장애인 승객들에게도 출입문 취급시간에 따라 탑승제한을 하는 만큼,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입문 취급을 위해 탑승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정치

이준석 "전장연,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 지속"

전장연이 외치는 것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는 것이다. 이 내용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은 한달에 7번밖에 외출하지 못하고, 성인장애인의 43%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한다. 장애인은 노동법에 최저임금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3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감옥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금 되어져 있다.

이동의 영역, 교육의 영역, 노동의 영역 등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떠한 일상적 차별을 겪고 있는지 아래의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목표도입률 대비 실제 도입률

구분	기간	목표 도입률(A)	실제 도입률(B)	도입 차(A-B)
1차 계획	2007~2011	31.5	12.0	19.5
2차 계획	2012~2016	41.5	22.3	19.2
3차 계획	2017~2021	42.0	27.8	14.2
4차 계획	2022~2026	62.0	29.3	-

출처: 제1~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2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중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음. 평생교육 참여율 또한 매우 낮음. 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3.5%인데 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0.2~1.6%(2017년 기준)로 나타남.

○ 경증/중증장애인 고용률·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비율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중증장애인	24.1%	7.1%	76.2%
경증장애인	40.3%	6.8%	56.7%
전체 국민	60.4%	3.5%	37.4%

표 제공: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통계

- 2017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가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수는 30,603명임.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자발적 의사로 입소한 비율은 14.3%에 불과
- 기상·취침 시간과 식사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각각 55%와 75.4%였고,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인이 71%였으며, 자신의 통장조차 타인에 의해 관리되는 이들이 61.7%였음.

‘이것이 비장애인이라면 살 수 있는 세상인가?’하고 묻고 싶다. 왜 장애인은 죽은 듯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하는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권리로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언제까지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감금시켜 놓을 것인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2/9/9 발표)

제8항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시설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나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명시. 이 외에도 여러 조항에 걸쳐 시설수용의 종식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 탈시설가이드라인 제119항과 121항은 국가의 사과 및 배·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수용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공식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 외에 시설 소규모화가 탈시설이 될 수 없고(제28항), 장애정도를 이유로 탈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며(제37항), 시설수용을 유지시키는 모든 법률, 규정, 관습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탈시설을 위한 법률을 마련할 것(제53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모든 것이 예산과 연결되어 있다.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에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이고, 비장애인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1939년 독일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 학살보다 먼저 장애인 학살 T4 작전으로도 유명하다. 나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비용이 5배가 더 든다는 이유로 T4작전으로 39만명의 장애인을 학살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의 나치 T4작전으로 장애인을 학살하고 있다. 더 이상 T4작전을 중단하고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지 말고 권리에산을 세워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혐오와 욕설을 멈추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차별은 그만 멈추고. 혐오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동정은 집어치우고, 장애인에게 권리를 보장 할 수 있게 전장연의 외침을 명확히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할 수 없는 몸 취급을 받으며,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다. 한 개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턱 앞에 가로 막혀 식당에 갈 수 없을 때, 교육의 현장에서 배제되었을 때,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몸을 닦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지하철 행동은 정치의 무책임, 정치의 무지, 정치의 실종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하철 행동의 투쟁 방식만을 지적하고, 혐오를 조장시켜 왔던 것은 정치였다.

지난 11일 차별금지법 입법화 계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가능한 빨리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의 무책임, 정치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앞장 서서 책임을 지는 정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단 하나의 집단만을 차별하는 이는 없다. 한 집단에게만 차별이 남아 있다 하여도, 그 차별은 언제 든지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게 확산 될 수 있다. 또한 차별은 매우 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전장연은 여전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외치고 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하철을 타게 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장애인 시민권 열차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열차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정부도 정치인도 시민도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 책임있게 해결하는 자는 없고 방관자만 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기다리라 할 것인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패널토론 5]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서의 정치의 책임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음)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서의 정치의 책임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처음 발의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훨씬 높고<sup>1)</sup>,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6월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단순히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음에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는 정치권이 말하는 ‘나중에’는 언제일지 아득하다.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이 법이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포괄적’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성소수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거나 특별대우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조직된 반동성에 개신교 집단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움직임 속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전선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찬성하는지 아닌지’에 고착되고 있다. 각종 선거와 고위공직자 공청회마다 동성애 찬성 여부를 묻는 단순하고도 혐오적인 문답은 이제 일상적인 레퍼토리처럼 반복된다. 이러한 문답을 지켜보고 있는 성소수자 개인들은 마치 우리 사회에 동등한 시민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이다.

1)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2021.11.29. 발표)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71.2%, 반대 21.7%.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2022.05.08. 발표)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67.2%, 반대 28.0%. 심지어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금지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알려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2022.01.15. 발표)에 따르면 개신교인 응답자 중 차별금지법 찬성은 42.4%, 반대는 31.5%로 개신교인 중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2021.05.20.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

##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제활동에서 겪는 차별의 경험이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성소수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 취업의 관문에서 채용 거부 및 입사 취소의 결과를 마주하고, 직장 내에서도 언어적 폭력과 업무상 부당한 대우 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러한 차별 경험의 강도가 더욱 심한 편이다.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는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직장에 대한 구직 시도를 포기한 적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성별표현에 대한 지적(26.6%)과 아웃팅(8.9%, 성희롱과 성폭행(8.2%)을 경험했다. 비슷하게 성소수자 청년 활동가 단체 다음에서 실시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이하 ‘청년 성소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33.6%는 최근 1년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차별 경험 비율은 69.6%에 달했다. 특히 구직 과정에서 자신이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8%였는데, 트랜스젠더 여성 응답자의 17.9%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반복적인 차별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직업적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 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차별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도 존재한다. 청년 성소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이를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급자,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의 다양한 공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한 이는 오직

4%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직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차별을 경험함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공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53.0%),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53.0%),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38.6%), ‘사람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28.6%), ‘당국 등을 믿을 수 없어서’(16.5%) 등을 꼽았다. 물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성소수자가 겪는 모든 차별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이 극도로 개인화되고, 공적인 경로를 통해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우리 사회가 자신이 겪은 차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에 있어서 국가는 단순히 방관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 등 민간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성소수자의 신뢰 수준도 처참한 수준인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성소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97.1%는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살기에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2014년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실시한 조사의 결과보다 나빠진 것인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는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62.7%) 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33.7%), ‘법과 정책의 부정적인 변화’(16.9%), ‘존재하는 법과 정책이 잘 실행되지 않음’(12.0%) 등이 꼽혔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해진 데에는 국가와 정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89.0%), 행정부(88.4%), 사법부(82.4%), 경찰(82.3%), 군대(91.4%) 등 국가기관이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 또한 매우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비롯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성소수자 차별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국가가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일부 혐오 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민주당이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이 2014년 53.4%에서 2021년 71.9%로 크게 높아진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동성애 반대'가 유용한 정치적 도구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흐름 속에서 성소수자 개인들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인식이다.

## 차별은 성소수자를 아프게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공적으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소수자는 실제로 아파진다. 사람의 건강은 실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폐를 상하게 하듯, 자신이 속한 환경과 사회에서 생활하며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청년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이 또래 청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 집단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4.28, 2019년 「한국복지패널」의 19~34세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4.09인데 반해, 청년 성소수자 실태조사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체 평균 3.3으로 보고되었다. 우울증 척도(CES-D)를 통해 확인한 정신 건강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및 심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파악된 가운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41.5%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 8.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2020)이나 국민건강영양조사(2019)의 만 19세~만 34세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거의 열 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응답 수치가 심상치 않다. 트랜스여성의 58.7%, 트랜스남성의 59.7%,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62.9%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트랜스여성 응답자들 가운데 20.2%는 최근 1년간 실

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가운데에서도 차별 경험도 많고, 정신건강 상의 부정적인 보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최근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로 인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배경에서 트랜스젠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청년 성소수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전반에 비해 종사상 지위, 노동시간, 고용 형태 등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향후 12개월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1.5%였는데, 트랜스젠더 여성 가운데는 무려 43.1%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직 과정과 직장 생활에서의 갖은 차별이 반복되면서 경제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어렵겠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다.

## 정치의 시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차별과 어려움은 공적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이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소수자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여전히 ‘나중’의 문제일 것이다. 이제는 ‘성소수자는 시민인가?’하는 질문을 다시금 던질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지연된 지난 17년의 기간을 되돌아보자. 한편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성소수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이라는 인식은 점차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악마화하고 병리화하면서 차별과 혐오선동을 정치적 도구 삼는 일부 세력의 활동 또한 더욱 조직되었고,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은 정치권은 이러한 움직임을 사실상 방조하고 조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추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몇 차례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한 연구조사를 한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정부 부처도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아 왔다.

반대로 지난 17년 동안 형성된 어떤 묘한 분위기는, ‘동성애’나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회피하고, 이를 금기시하는 다양한 행정기관, 자치단체, 정부부처의 일관된 경향이다. 일례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조사와 근거 마련에 힘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부처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동성애 찬반’이 정쟁의 수단이 됨으로써 성소수자를 공적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공적 영역에 입력되어 온 이러한 과정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의미를 단순히 이 법이 약속하는 제도적 보호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만들어 온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의 시간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혐오의 언어가 확산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이미 중립적인 위치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의 많은 부분이 민간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과연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제 분명히 답할 시간이다.



---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인 쇄| 2023년 4월

|발 행| 2023년 4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차별시정총괄과

|전 화| 02)2125-9949 |F A X| 02)2125-0923

|Homepage|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주)두루행복한세상 (여성·장애인표준사업장)

|전 화| (070) 4659-0803 |F A X| (070) 7500-1146

---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